

# 팔기제와 만주족의 중국지배

## —팔기제의 興衰와 滿洲政權의 消長—

徐正欽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 머리말

중국의 마지막 정복왕조, 청조는 만주족의 독특한 지배체제로 한족을 지배하였다. 당시 정복자 만주족 지배층에서도 어떻게 통치하느냐고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다. 소수의 만주족 왕조인 청조의 入關·定都를 가능케 한 動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다. 물론 그것은 한·두 가지만이 아닐 것이다. 단순히 어떤 제도 하나 때문에 중국 지배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16세기~17세기 만주족은 여진족·몽고족·한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누르하치라는 인물의 탁월한 지도력과 그의 사상, 정치력, 풍부한 전투 경험에서 오는 전투 능력, 조직을 유지·인도하는데 필수적인 용인술 등도 고려에 넣을 수 있다. 유목·수렵사회에서 유능한 지도자의 출현은 그들 부족의 통합과 주변 지역의 흡수, 국가의 건설 등으로 이어지지만, 유능한 지도자가 부재할 경우는, 그들은 금방 분산되어 버린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명대의 여진족은 朝鮮과 明의 사이에서 각 씨족·부족마다 낙후된 수렵·半農的인 낮은 수준의 단계에서 생활을 하였다. 시대적으로 보면, 明의 쇠퇴와 일본의 조선 침략시, 조선에 대한 원조(援朝) 등의 사정으로, 明朝가 만주지역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만주족은 元末 이래 분산 거주하던 몽고족을 그들의 협력자로 만들고, 朝鮮·明과는 무역을 통한 교류로 성장해 나간다. 조선으로부터의 철기 기술의 수입, 농경기술의 도입 등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만주족의 급속한 성장과 중국 정복을 가능하게 한 요건들 중에서, 청조의 성장 과정에서 그 動因의 하나를 찾을 수 있다. 신흥 複合部族(多民族) 국가의 국내질서의 기반으로 창설되어 청조 지배체제를 지탱·유지하는 것이 팔기제도였다.<sup>1)</sup> 그것이 만주족융합을 촉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만주족의 중국 입관·정복<sup>2)</sup>을 가능하게 했던 유일한 내부적 요인을 찾는다면, 그들이 가진 무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군사력의 기반은 그들이 창설한 만주팔기라고 하는 군단이었다. 팔기제도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청조 군사력의 원천이 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보면, 청조 사회를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청조를 「팔기제 사회」, 즉 「팔기제 지배의 사회」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팔기제도」를 「팔기제·만주팔기·팔기병제·팔기」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것이 병제(군사제도)적인 측면만 가진 것이 아니고, 사회제도 내지 생산제도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조직이므로, 그 특징을

논문접수일 : 2005년 9월 16일, 게재확정일 : 2005년 9월 30일

1) 石橋崇雄, 「만슈(Manju, 滿洲) 王朝論」, 『明清時代史의 基本問題』(汲古書院, 1997) 297쪽. 同, 「清朝國家論」, 『岩波講座世界歷史』 13, 179쪽.

2) 張玉興, 「論清兵入關의 文化背景」, 『清史研究』 1995年 第4期.

표현하여 「軍·政合一, 兵·民一體」라고도 한다. 군사제도는 바로 정치 권력과 연결되며, 또 兵權의 소제가 정치 변동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 兵制의 편성 방법 여하는 국가 권력의 集中度에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때문에 국가 조직면을 말할 때, 兵制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조 정치력의 원천이던 팔기제에 대한 연구는 청조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청조 무력의 근원이 바로 팔기제도인 것이다. 청조 지배의 핵심 조직이었던만큼, 팔기제도의 消長은 곧 청조 정권의 쇠망과 그 운명을 같이 했던 것이다.

清朝史 이해를 위한 선행 조건인 팔기제 연구는 근 80여년 동안 연구되어 왔으나, 아직 그 실체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조가 官修 역사편찬할 때의 纂改 문제, 만주족 지배자의 은폐(비밀주의)와 혼란스런 기록과 모순의 현상이 팔기제도의 연구에 많은 곤란을 가져오게 했다. 팔기제도의 연구와 만주족사회와 청조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방면의 연구가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으므로, 그것이 팔기제도의 연구를 크게 촉진했으며, 팔기제도의 연구는 다시 만주족 역사·청조사 연구를 자극했다. 일본<sup>3)</sup>·중국의 경우<sup>4)</sup>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sup>5)</sup>는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부분적이고 지엽적이기는 하되 최근까지 꾸준하게, 연구 인구의 확대·발전이 보이고 있다. 분야에 따라 어떤 부분은 아직 공백인 상태도 있다.

- 3) 일본의 경우는, 稻葉岩吉, 『清朝全史』(上·下), 早稻田大學出版部(1914), 同,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 京城 大阪屋號書店(1933)(國書刊行會, 1976), 安部健夫, 『清代史の研究』, 創文社(1972), 三田村泰助, 『清朝前史の研究』, 京都大學東洋史研究會(1972), 阿南惟敬, 『清初軍事史論考』, 甲陽書房(1980), 그리고 女直史에 대해서, 園田一龜, 『明代建州女直史研究』, 東洋文庫(1948)가 있다. 그리고 杉山清彦의 『清初正藍旗考』, 『史學雜誌』第107編第7号, 1998.7), 『關於天命天聰朝的正藍旗』(『滿學研究』第5期, 北京, 民族出版社, 2000.12), 『八旗旗王制的 성립』(『東洋學報』第83卷 第1號, 2001.6), 『大清帝國史のための覺書』, 『滿族史研究通信』第10號, 2001.4), 『清初八旗における最有力軍團』, 『內陸アジア史研究』第16號, 2001.3), 『ヌルハチ時代のヒヤ制』(『東洋史研究』第62卷 第1號, 2003.6), 또, 上田裕之, 『八旗俸祿制度の成立過程』(『滿族史研究』第2号, 2003.5), 石橋秀雄의 『清代史研究』(綠蔭書房, 1989), 『清代中國의 諸問題』(山川出版社, 1995), 石橋崇雄의 『清代中國의 諸問題』(山川出版社, 1995), 『大清帝國』(講談社, 2000) 등이 있다.
- 4) 孟森的 『八旗制度考實』(『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6本, 第3分)(1936), 1960년대 초기부터, 80년대 초기에 걸쳐, 鄭天挺, 『探微集』(中華書局, 1980), 傅樂煥, 『關於清代滿族的幾個問題』, 『中國民族問題研究集刊』(1957), 莫東寅, 『八旗制度-清初의 社會結構』(『滿族史論叢』, 1958), 王鍾翰, 『清初八旗蒙古考』(『清史雜考』, 人民出版社, 1957), 李旭, 『論八旗制度』(『中華文史論集』第5輯, 1964), 周遠廉, 『關於八旗制度的幾個問題』, (『清史論叢』第3輯, 1982), 李鴻彬·郭成康, 『努爾哈赤1601年建旗考釋』(『故宮博物院院刊』1981年 第4期) 등이다. 臺灣의 陳文石, 『八旗滿洲牛鼻의 構成』(『大陸雜誌』第3卷 第9·10期, 1965), 同, 『滿洲八旗의 戶口名色』(『中央研究院歷史所集刊』 제43本 第2分, 1971), 李宗侗, 『清代中央政權形態的演變』(『中央研究院歷史所集刊』第37本, 1967) 등이 있다.
- 5) 청조의 사회 내지 팔기문제와 관련된 논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대 만주사회의 성립에 대하여는, 金九鎮, 『女眞社會의 tatan(窩舖) 제도에 대한 연구(만주八旗제도와 愛親覺羅의 기원에 대하여)』, 『人文科學』(홍익대 인문과학연구소) 第9輯(2001), 동, 『만주 Gurum의 성립』, 『人文科學』(弘益대) 10집(2002), 金斗鉉, 『요동지배기 누르하치의 대한인정적』, 『東洋史學研究』第25輯(1987), 노기식, 『明代蒙古和滿洲의 交替』, 『明清史研究』第20輯(2004), 동, 『후금시기 만주와 몽골의 연명 관계』, 『明清史研究』第11輯(1999), 동, 『후금 요동진출 전후 만주와 몽골의 관계역진』, 『中國學論叢』(고려대) 第12輯(1999), 동, 『만주의 몽골 차하르부 병합과 그 의미』, 『中國學論叢』 14집(고려대) (2001), 同, 『누르하치의 앞반에 대한 組織化와 統制』, 『明清史研究』第16輯(2002), 柳智元, 『누르하치의 赫圖阿拉城』, 『明清史研究』, 第11輯, 이경찬·유지원, 『사르후 전투와 누르하치』, 『明清史研究』 13집(2000), 동, 『청대전기 동북의 변성(邊城) 영고탑(寧古塔)』, 『明清史研究』 第10輯(1999), 同, 『청조성립기 都城의 입지특성과 계보에 관한 연구』, 『韓國傳統造景學會誌』第22輯(2004), 拙稿, 『明末 사르후(薩爾滸)戰과 그 성격』, 『安東史學』 2집(1994), 『清初의 國號問題』, 『大丘史學』 28집(1985), 金貴達, 『女眞族의 國家組織에 대한 고찰』, 『大丘史學』 7.8合輯(1973), 조병학, 『後金の 察哈爾 복속과정 연구』, 『몽골학』 제12호(2002), 同, 『후금의 흑룡강 주변에 대한 平定 과정 및 복속 정책』, 『몽골학』(한국몽골학회) 제17호(2004), 또, 팔기제도와 관련하여, 拙稿, 『明末의 建州女直과 八旗制의 起源』, 『歷史教育論叢』 2집(1996), 동, 『八旗制와 清初社會』, 『安東大論文集』 4집, 金斗鉉, 『八旗制度의 구조분석을 위한 시론』, 『蔚山史學』, 第5輯(1992), 同, 『만문노당』과 『구만주당』 對照表, 太祖朝(1), 『人文論叢』 21집(울산대인문과학연구소)(2002), 同 (2), 『中國史研究』 第25輯(2003), 任桂淳, 『清朝八旗駐防與衰史』, 北京 三聯書店(1993), 김구진, 『清代 滿洲八旗制의 淵源(uksun(族)과 gasan(葉)을 중심으로)』, 『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 1권(역사학), 1992, 金鍾圓, 『八旗制度의 成立過程에 대한 一考察』, 『東亞研究』(서강대 동아연구소) 第6輯(1985), 趙載德, 『清初 滿洲佐領에 대한 一考察』, 『慶熙史學』 第20輯(1999) 등이 있고, 또 이시기 연구 방향에 대하여는, 金鍾圓, 『清의 入關前史 연구의 제문제』, 『東洋史學研究』 第25輯(1987), 金九鎮, 『만주사 연구의 시대적 추이와 그 바람직한 연구방향 모색』, 『東洋史學研究』 제50집 1호(1995) 등이 있다.

여기서는 「팔기제와 만주족의 중국지배」의 관련을 검토함에 있어, 우선 팔기의 실체에 대한 검토와 旗主 변화의 推移, 그리고 팔기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만주족의 중국 지배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부분적인 고찰 보다는 淸初에서 중기 이후까지의 중국 지배와의 관련한 전반적인 고찰 통해서 팔기제 및 청조 사회를 이해하고자 한다.

## 一. 만주족 사회와 팔기제도

### 1. 八旗 旗主의 변화

#### (1) 「니루」와 「구사」

##### ① 니루(niru牛录=箭) :

만주팔기의 호구편제는 每300人 1니루(牛录=佐領)가 기본단위로, 5개 니루가 1갈란(甲喇)=參領, 5개 甲喇이 1 구사(固山=都統)로 이루어지는 조직이다. 먼저 팔기조직의 기본인 니루를 살펴보고, 구사어전(旗主)의 領旗관계를 통해 초기 청조의 권력관계의 추이를 살펴보자.

②니루는 300人的 조직이다. 1니루의 長을 니루어전(niru i ejen)이라 한다. 旗人의 모든 생활을 관리한다. 소속인의 호적 관리한다. 壯丁을 編審하고, 무예, 戶口 조사, 소속인의 교양·풍속의 유지, 상벌 등을 관리한다. 니루 어전(이하에서 “佐領”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이 旗政에서 일을 관리하는 것은 「州縣의 백성에 있어서와 같은 것이」라고 하거나, 「팔기의 참령·좌령은 一旗는 一省과 같고, 一參領은 一府와 같고, 一佐領은 一縣과 같다」고 하거나, 「니루는 縣一級에 해당하고, 갈란은 專區에 상당하고 구사는 省級에 상당한다」고 비교하기도 한다<sup>6)</sup>.

③팔기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 니루(niru,牛录) 조직이다<sup>8)</sup>. 『太祖武皇帝實錄』 권2의 기사에 수렵과 有關한 것이 있다. 天命 5년(1620)에 論功序爵을 하면서 「備御」로 개칭했는데, 天聰 8년(1623)에 만주족의 漢化 방식을 위해 漢語화된 명칭을 다시 滿文으로 고쳤는데, 「牛录章京」으로, 順治17년(1660) 팔기 직관의 명칭을 정할 때, 「佐領」(正4品)으로 개칭되었다<sup>9)</sup>. 니루는 甲士에게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養兵母體라는 설<sup>10)</sup>이 있으나 그 반론<sup>11)</sup>도 있어서 설득력을 잃고 있지만, 아직 니루 300명 男丁의 실체도 확실하게 해명되지는 않고 있다.

④니루는 원래 ho o制 내지 gdša制의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다. 즉 旗人 통제의 하급 단위로서, 원래는 만주인이 出獵行師할 때에 족당(族黨, uksun)·둔채(屯寨, ga an)에 따라서 행하던 그 軍丁의 편성을 말하며, 군인 단체의 명칭이었으나 나중에는 軍民 집단 자체를 「니루」라고 하였다. 「니

6) 갈란(jalan, 甲喇)은 「물건을 중도에서 끊음(節)」·「순서(代)」·「輩」라는 뜻이 있는데, 구사제도의 중간 단위이다.

7) 鄭天挺 遺著, 「牛录·城守官·姓長」, 『社會科學戰線』 1982年 3期

8) 趙載德, 「淸初 滿洲佐領에 관한 一考察」, 『慶熙史學』 第20輯, 1996.

9) 「淸代前期的佐領」(『社會科學戰線』, 1982年 1期)에서 “좌령은 복역 성질과 좌령하 구성원의 신분과 歸屬의 차이로써 내과령, 외과령으로 나뉜다. 전자는 황실 및 貝勒王公府에서 복무하며 속칭 布衣佐領이라고하고, 후자는 국가에 복무하녀 통상 旗分佐領이라 하는데 이것은 팔기제도 중의 핵심부분으로 국가 機器중의 중요부분이다. 좌령은 世管佐領과 中公佐領으로 나누는데, 즉 管理佐領의 자손 得分과 不得分の 有世襲權과 無世襲權의 두 종류로 나뉜다.”고 했다.

10) 安部健夫, 「八旗滿洲ニルの研究」, 『淸代史の研究』 所收, 創文社, 1972.

11) 阿南惟敬, 「淸初의 甲士에 關する 考察」, 『淸初軍事史論考』, 甲陽書房(1980), 石橋秀雄, 「淸初의 ジュシェンjušen-特にまでおとして」, 『淸代史研究』, 綠蔭書房, 1989. 同. 「淸初의 社會-とくに ジュシェンについて」, 『위의 책』

루」라는 명칭이 처음 보이는 것은 『太祖武皇帝實錄』갑신년(만력12, 1584) 9월조의 기사이다. 이 때 牛糞之爵이 주어졌다.

㉔ 「니루」에서의 병역은 소속 300명 중에서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의 병사를 차출하여 군대를 편성했다. 이들의 군비는 니루下의 男丁이 공동으로 부담했다. 貢納은 농사·수렵·채취 등에 의한 수확물의 일부를 공출하였다. 요역은 築城 등에 동원되는 형태였을 것이다. 니루는 군사력의 기반이 되지만, 군사조직 자체는 아니다<sup>12)</sup>. 즉, 니루에는 토지, 기타의 재물이 주어지는 대신에 兵丁, 요역 및 각출물(공물)이 부과되는데, 니루 어전은 이것을 니루下의 旗人에게 안배하였다. 당시 각처의 추장들이 軍民을 데리고 투항하는 경우, 관직과 妻·奴 및 가축, 種穀 들과 토지를 주었다. 그 추장 및 소속인이 니루에 편성될 때, 토지도 그대로 함께 소속되었다. 그 후 耕地를 찾아 니루의 遷移가 이루어지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서도 遷移가 이루어졌다. 旗人은 니루에서 주어진 일정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1니루의 집단적 친이 허용되어도 사사로이 니루의 토지를 떠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sup>13)</sup>. 니루下의 旗人을 부양하고 감독하는 것은 니루어전의 책임이었다. 또 니루 內의 富者는 貧者를 구휼하고 빈자 대신 요역을 하기도 하였다. 旗에서 병정을 징발하고 요역을 할당하고 재물을 각출하는 경우, 당초에는 니루어전에게 명하고, 다시 니루어전은 이것을 니루 소속 旗人에게 분담시켰으나 정해진 액수는 없었다. 태종 때 대개 니루 소속 기인에 대해서 三丁마다 一兵을 선발하는 규정이 적용되었다.<sup>14)</sup> 니루는 구성원 및 복역하는 성질로 보면 外니루(在外니루)와 內니루(在內니루)로 대별된다<sup>15)</sup>. 外니루는 국가에 복역하는 公家니루인데, 內니루는 私家에 속한 노복같은 布衣니루(booi niru)이다. 대부분은 국가에 복역하나 나머지는 本旗 버일러(貝勒) 王公대신에게 給使하였다. 公家니루는 나중에 旗分佐領이라 하였고, 포의니루는 布衣佐領(booi niru)이라 하였다. 布衣니루의 구성원 중에서 어떤 것은 전쟁포로, 범죄자 및 그 자손도 있었는데, 布衣에 예속된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공역에 복역할 필요가 없었으나, 그들의 거주·생활·혼인·娶妻는 本主의 命을 받아서 했다. 그 奴籍은 소유주 자손에게 상속되고 그 主人의 허가나 조정의 칙령이 없이는 벗어날 수 없었다.

㉕ 니루 편성의 초기 원칙은 자진해서 투항한 자나 정복해서 투항시킨 자를 물론하고 모두 그 원래 부족의 혈연·지연 관계에 따라 편성하고 니루어전은 각 부족 群의 족장, 姓長이 담당하도록 했다. 니루 구성원은 원래는 氏族員의 신분이지만 팔기군의 일원이기도 했다<sup>16)</sup>. 누르하치 시대에, 니루 下의 각 부족이 단결하여 승리한 주 요인은 팔기제 下의 니루조직의 受容性에 있었다. 즉 이질분자가 흡수되어 있어서 그들이 강력한 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300인 1니루제의 구성에서 니루 구성원의 장정의 나이는 일정하지 않다<sup>17)</sup>.

㉖ 니루의 관리조직은 長인 니루어전 1명, 1~2명의 다이서(代子, daise), 그리고 4명의 janggin(章京), 4명의 ga an bo oku 등이다. 니루어전은 순수한 行軍官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무기의 보존, 軍馬 양육 여하에 따라 지위가 달라졌다. 니루어전의 중요 의무 중의 하나가 uksin(甲冑兵)의 양성이다. 니루는 uksin의 모체이며 니루의 壯丁 중에서 선발한 자가 니루어전이다. 물이사냥에서는 十人 弓手의 지휘자이고 전투시에는 十人 uksin을 인솔하는 十人長이었다. 300인 니루제는 팔기의 중핵인 uksin의 양성과 여러 가지 군

12) 金斗鉉, 「八旗制度的 구조분석을 위한 시론」, 『蔚山史學』 第5輯, 1992.

13) 『太宗文皇帝實錄』 卷1, 天命 11年 9月 丙子條

14) 「위의 책」 卷17, 302쪽

15) 陳文石, 「滿洲八旗牛糞의 構成」, 『大陸雜誌』 第3卷, 第9·10期, 1965 참조.

16) 劉小萌, 「明末女真社會氏族制度的瓦解」,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1996年 第5期

17) 周藤吉, 「清代滿洲土地政策の研究」(河出書房, 1944)에서 18세로 보고 있으나, 管東實(「入關前滿族兵數與人口問題的探討」, 『史語所集刊』 第41本 第2分, 183쪽)에서 15세라 하고 있으며, 『清史稿』 卷126 食貨志 戶口에서는 「男年十六曰成了」이라 하여, 16세로 보았다.

무 수행에 필요한 잡역 부과를 목적으로 편성된 일종의 民兵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만주족 사회는 hala내지 mukun이라는 종족공동체에 결부되어 그 구성원로서 각 tatan을 거점으로 땅을 점유하고 생활을 하고 있었다. 소위 mukun·tatan制 사회였다. 니루제의 기반은 mukun<sup>18)</sup>과 ga an의 장정에 두고 있다<sup>19)</sup>. 그러나 니루의 구성원은 요역의 성격을 포함하여 병역에 복역하는 일간 장정이므로 uksin과는 다르다. 니루어전은 300인 1니루제로 신설된 민병조직의 통솔자인 동시에 十人長이라는 명칭이 합쳐진 것이다. 즉, 行軍官과 治民官의 성격을 포함한 長인 것이다. 니루어전의 업무는 실로 광범위하다<sup>20)</sup>. 1644년 入關 후에는 업무가 증가되었다.

「다이서(daise)」는 니루어전의 보좌역으로, 1634 (천총8)년 官名國語化 시기에 分得發什庫(fundebo oku=代行者라는 의미)로 했다. janggin(章京)은 組豆, 班長이라는 의미로 tatan의 현장 지휘자인데, 小發什庫로 개칭된다. ga an bo oku 에 대해서 보면, bo oku란 니루의 일을 처리하고 장부를 담당하는 자이니, ga an 을 대상으로 해서 니루의 관계 사항을 처리하는 직책이다.

㉔니루의 人數 300명은 하나의 준척이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 「所聚之衆」의 조건에 따라 달랐다. 「八旗氏族通譜」에는 300명 내지 500명으로 1니루를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팔기제도의 변화로 인해 직능도 변화했으며, 좌령에도 200~300丁, 적으면 100丁 정도로<sup>21)</sup> 차이가 난다.

니루 男丁(니루이 하하, nirui haha)연령은 男丁이 16세 이상이면 披甲當差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이 대오에 들 수 없고 兵丁類別에 따라서 名額을 정했는데, 각 佐領下에 「挑補」라 하여, 찿을 세워 훈련하는데 “額兵”이라 칭했다. 額兵 이외에 “隨甲”이 있는데 武官의 隨從이다. 이 외에는 모두 「餘丁」이라 했다. 餘丁은 16세 미만의 幼丁인데 “養育兵”을 挑補할 수 있는데, 곧 豫備兵이다<sup>22)</sup>.

㉕팔기 창설 연대는 만력 43년(1615)설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또, 天命 元年설, 天命3年說<sup>23)</sup>도 있다. 「太祖武皇帝實錄」卷2, 乙卯條나, 「滿洲實錄」, 「清史稿」에 나오는 기사에 의해, 팔기의 初設이 을묘년(만력43년, 1615)이라는 것이다<sup>24)</sup>. 「만문노당」의 을묘년(1615)조에 팔기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기사는 안 보인다. 丙辰年(1616, 만력44) 누르하치 즉위 관계 기사중에 보면, 팔기제가 이미 성립해 있었음을 보여준다.<sup>25)</sup> 그것이 니루(牛魯)제의 대규모 整編이었던 것이다. 나중에 그들과 다른 몽고, 한족, 기타 민족까지도 강제로 편입하였다. 몽고족·한족·만주족까지도 八旗에 편입하여 “八旗滿洲” “八旗蒙古” 혹은 “八旗漢軍”이라 하였다<sup>26)</sup>. 초기에 편성된 팔기는, 나중에 「八旗滿洲<sup>27)</sup>」라 칭했으며, 구성원도 모두가 다 만주족은 아

18) 曾井寬也, 「滿族人關前のムクンについて」, 『立命館史學』(立命館大學, 1993), 790쪽.

19) 中山八郎, 「清初のヌルハチ王國の統治機構」, 『明清史論集』(汲古書院, 1995)(『一橋論叢』1944, 14-2호) 314쪽.

20) 壯丁을 編審하고, 戶口를 조사하고, 토지를 다스리고, 농사를 돌봐주고, 무예를 익히고 전투를 가르치며, 軍器를 수선 유지하고, 풍속 도덕을 제대로 유지하며, 가벼운 민간 사건을 심리하며, 혼인, 장례 등 그 屬下人들의 생활을 살핀다(陳文石, 「앞의 글」)

21) 劉辰主編, 「中國古代軍制史」, 軍事科學出版社,(1992) 474쪽.

22) 위와 같음.

23) 石橋崇雄, 「Aḡusa와 Aḡusa色別との成立時期について」, 『中國近代史研究』3輯(1983). 石橋는 清朝의 역사 기록은 이미 팔기제하에 통합된 여진족사회에서 추대된 han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팔기제 사회에서 han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han 즉위 前年에 팔기제도 성립의 기사를 삽입했다고 이해하고. 실제로는 han즉위 후에, 지배의 강화·유지·안정을 꾀하는 과정에서 성립하였는데, 그 배경은 통합의 최종 단계에서 만나게 될 明朝와의 직접대결에 대비한 군사조직의 정비였다고 보는 것이다.

24) 그러나 「청조통전」, 「청조문헌통고」의 기사에는 1년 전인 갑인년(만력42년, 1614)으로 보고 있다. 물론, 팔기제가 한 번의 명령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갑인년에 발령하여 을묘년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25) 任玉雪, 「八旗牛魯起源時間問題再探」, 『滿族研究』2004年1期.

26) 王鍾翰, 「清史雜考」(人民出版社, 1957) 118쪽. 文鍾哲, 「滿洲複合民族中的朝鮮族旗人及其後裔的族屬問題」, 『中央民族大學學報』1997年 第1期

니였지만 만주족이 중심이었다.

②잘란·구사(gūsa=固山=旗)(八旗=jakūn gūsa) :

㉞니루는 「화살(箭)」, 구사는 「旗」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잘란(jalan, 甲喇)은 「물건을 중도에서 끊음(節)·순서(代)·輩」라는 뜻이 있으며, 구사제도의 중간 단위이다. 1 구사 소속의 니루 數가 늘어나자, 구사와 니루와의 중간 단위가 필요하게 되어, 몇 개의 니루 집단을 부르는 단위로 사용된 것이다. 그 책임자를 jalan ejen(甲喇額眞)이라 하는데, 편제상에서는 5개 니루를 관할하고 있다<sup>27)</sup>.

구사(gūsa, 固山)는 만주 戶口편제의 最大 단위로, 每 구사마다 각각 그 부대 專用의 색깔 있는 旗幟를 사용했다. 그래서 구사를 漢譯하여 旗라 한다<sup>29)</sup>. 1601년에 만주인이 소수일 때, 4개 구사가 있었다<sup>30)</sup>. 황·백·홍·람색으로 된 네 개의 旗幟를 사용했다<sup>31)</sup>. 인구가 늘어나, 1615년에 4개의 구사를 증설했다. 원래의 4개 기치에다 주위에 태두리(황·백·람기는 붉은색 태두리, 홍기는 흰색 태두리)를 둘러서 8 종류의 다른 기치를 사용했다. 태두리가 없는 황색기를 整黃旗라 하는데 곧 整幅의 황기를, 혹은 正黃旗라 칭한다. 붉은 태두리를 두른 황색기를 鑲邊黃旗, 鑲黃旗라 한다. 廂黃旗라고도 쓴다<sup>32)</sup>. 원래 龍紋이 없는 팔기 旗幟였으나, 홍타이지 시대에 와서 正·鑲 八旗로 된다.

㉟처음에 각 구사(旗)<sup>33)</sup>마다 관리하는 長을 「구사어전(gūsa ejen, 固山額眞)」이라 했다. 입관 후에는 1660년에 명칭을 漢語로 고쳐, 「都統」이라 하였다.

인구 증가로 인해, 니루 數도 증가하지만, 5개 잘란=1 구사를 편성했다. 구사어전은 모든 政令과 사무를 총리하고 兵에 대한 처벌, 호구의 조사, 獄事의 심리, 田土·馬政의 관리를 한다. 또 중앙 정부의 議政에도 참여한다. 구사어전은 메이련어전(梅勒額眞)의 보좌를 받아, 旗의 軍·政을 담당하였다. 초기에는 여러 貝勒이 직접 旗政에 관계하고 있음을 보는데, 구사어전이 있음에도 누르하치의 子弟나 조카인 여러 貝勒이 다시 그 위에서 旗務의 수행을 관장하고 있었다. 버일러(beile, 貝勒<sup>34)</sup>)는 넓게는 「旗의 王」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滿文老檔』에는 beile의 복수형 beise와 amban의 복수형 ambasa 합하여서 「beise ambasa(諸王 諸大臣)」라 한 경우를 본다.

㊱또, 각 旗에는 호쇼버일러(ho o beile和碩貝勒<sup>35)</sup>)라고 하는 봉건영주 같은 자가 있어서, 이를 장악하

27) 팔기제도를 창건한 이후 100년 동안, 八旗를 기록이 없었다. 1727(옹정5)년 4월 초8일, 皇五子와 親王 弘晝와 대학사 馬齊, 鄂爾泰, 張廷玉 등이 봉칙 찬수하기 시작하여 1739(건륭4)년 「八旗通志」 初集 253권을 완성한 것이 팔기에 대한 기록의 처음이다. 1796(嘉慶元)년 대학사 福康安 등이 봉칙 續修하여 전릉 연간의 사실을 증보하고, 初集을 보충한 「八旗通志」 續集 356권을 편찬하였다.

28) 姜相順, 「試解滿洲八旗創制之謎」(甲喇固山考釋), 『滿族研究』 1986年 第3期

29) 鴛淵一, 「清初의 八固山額眞에 就いて」, 『山下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文集』(六盟館, 1938) 285쪽, 田中宏己, 「固山考」, 『史觀』 78(1968), 55~71쪽. 참조.

30) 石橋崇雄, 「マジンユ(manju 滿洲)王朝論」, 『明清時代史の基本問題』(1996)

31) 王革生, 「清代八旗의 旗幟」, 『社會科學集刊』, 1980年 第6期, 李鴻彬·郭成康, 「也談八旗旗幟」, 『社會科學集刊』 1982年 第1期. 周遠廉, 『清朝開國史研究』, 遼寧人民出版社, 1981, 同, 『清朝興起史』, 吉林文史出版社(1986). 袁閻坤外, 『清代前史』, 沈陽出版社(2004), 269쪽. 참조.

32) 鄭天挺, 「清代的八旗兵和綠營兵」, 『歷史教學』 1955年 1期

33) 固山(gūsa)와 旗(gūsa)는 동의어로 기록에는 보이지만, 발생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다른 말이었다. 固山(gūsa)는 단체, 그 자체를 말하고, 旗(gūsa)는 색깔로서 구분되는 표지에 불과하다. 즉 固山(gūsa)는 단순한 군단으로서 병제상의 단위였으나 만주족이 발전함에 따라 누르하치가 「여러 群團」이라는 의미로서 구사를 사회구성·국가조직상의 단위로 삼게 됨에 이르러, 그 단위로서는 여전히 만주어 固山(gūsa)라 불렀지만, 의미는 변하게 되어서 중국어 旗(gūsa)라고 불리게 되어, 두 가지가 동의어로 간주된 것이다. 拙稿, 「八旗制와 清初社會」, 『安東大論文集』 第4輯(1982)

34) 鴛淵一, 「清初太祖時代의 貝勒에 關する一考察」, 『史學研究』(77·78·79合併號, 1960)에서 貝勒은 공로자에게 주어지는 褒賞의 칭호라 하였다.

35) gūsa의 同義語 중에 hošo(和碩)라는 명칭은 몽고어에서 유래하는데, 독정(纛頂, 旗竿의 꼭대기에 있는 鐵로 된 구슬)에서 유래

며, 旗(gūsa)를 지배·관리하고 최고 정치에 관여하는 貝勒(버일러)을 의미한다<sup>36)</sup>(八和碩貝勒共治國政制<sup>37)</sup>). 그런데 관직 내지 官爵으로서의 호쇼버일러 제도는 旗制와 함께 비롯된 것이겠지만, ho o가 gūsa 보다는 高次的인 개념이다<sup>38)</sup>. 中山八郎은 ho o가 「四」라는 의미는 없지만 四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sup>39)</sup>. 누르하치가 지은 八角殿과 八和碩貝勒 내지는 八gūsa와의 사이에 의미적인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申忠一의 『建州紀程圖記』에 보인 바와 같이 그들 사이에는 四角을 존중하는 사상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sup>40)</sup>. 四大王은 다이센(代善), 아민(阿敏), 망골타이(莽古爾泰), 홍타이지(皇太極)이고, 四小王은 지르가랑(濟爾哈郎), 도르곤(多爾袞), 도도(多鐸), 요도(岳托)인데, 이들이 八和碩貝勒이다. 一旗를 전적으로 거느리는 旗主의 貝勒, 卽 旗主, 主旗貝勒이라 개칭하고, 「主旗」貝勒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旗內 諸貝勒을 분명히 선을 긋고, 各旗의 管旗大臣·구사 이전과도 명확한 분별을 그었다. 1615년 팔기제도를 창설하면서 主旗貝勒을 시작했다<sup>41)</sup>.

㉔ 「八旗(jakūn gūsa)」에서 「八」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동서남북의 4 기본 방위에 각각의 중간 방위를 다하면 8개의 방위가 되며,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쌍을 나타낸다. 불교에서 8은 완성상태, 모든 가능성을 나타내며 불족석(佛足石)의 팔길상인(八吉祥印)이다. 중국에서 8은 전체, 모든 가능성의 현현, 행운의 상징이다. 주역의 팔괘(八卦). 8은 3과 5의 합이다. 上三旗, 下五旗라고 하지 않던가? 상생과 상극의 합이다. 음과 양이 만난다는 의미에서 8은 토(土)의 수, 태극의 수이다. 사통팔달(四通八達)이란 말은 사방 팔방(四方八方)으로 연결된 중앙이다. 누르하치가 건설한 심양의 궁전 모양이 팔각으로 되어 있다. 8王이니, 8貝勒이니 하는 것도 이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㉕ 八旗 人戶는 거주, 駐屯, 행군, 수렵, 祭祀班列에서 각기 고정된 方位가 있다. 黃旗는 北에, 白旗는 東에, 紅旗는 西에, 藍旗는 南에 위치했다. 동시에 左·右翼으로 나누고, 좌익은 鑲黃, 正白, 鑲白, 正藍 四旗로, 東四旗라고도 불렀다. 右翼은 正黃, 正紅, 鑲紅, 鑲藍 四旗로, 西四旗라고도 불렀다. 어떤 장소에서도 그의 방위, 次序는 모두 불변이었다. 순치 이후의 八旗는 上三旗(鑲黃·正黃·正白)와 下五旗로 나눈다. 이는 入關前 旗主制의 잔여이며, 황제가 원래 이 三旗의 旗主였던 데서 유래한다. 그래서 上三旗는 나중에 天子自爵<sup>42)</sup>이라 했다. 황제의 宿衛는 이 三旗의 子弟에게 맡긴다. 上三旗의 布衣(家內 사무를 관리하는 奴僕)도 곧 一個 內務部가 되었다. 나머지 五旗는 원래의 旗主가 귀족인데, 五旗人과 나중의 황제는 직접관계가 없다. 그래서 下五旗는 황제 侍衛를 맡지 않고 귀족, 王公의 일을 담당했다. 五旗의 布衣도 各旗 자기 관리했다. 이외에 팔기의 권리, 의무는 일치한다(황제의 아들은 成年 이후에 下五旗에 편입되었다).

㉖ 입관 후, 팔기병은 녹기병처럼 월급제(薪給制)여서 每月 일정한 “餉銀”이 주어졌고, 매년 일정한 歲米

하고 있다. nutuk(몽고어로 境界·鄉里) 所領으로서의 旗分 내지는 旗軍을 의미한다. 원래부터 「旗」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轟·大轟」 또는 「깃발」이라는 의미인데, 군사·정치적 단위였다. 神田信夫, 「清初の貝勒について」, 『東洋學報』 第40卷 第4號, 1958.

36) 神田信夫, 앞의 논문. 58쪽. 杉山清彦은 「旗王」이라 하였다. 杉山清彦, 「清初正藍旗考」, 『史學雜誌』 第107編 第7號, 1998.7.

37) 周遠廉 「後金八和碩貝勒' 共治國政' 論」(『清史論叢』 1980年 2期). 楊珍, 「後金八王共治國政制研究」, 『中國史研究』 2000年 第1期.

38) 『韓漢清文鑑』 卷1, 地部 地輿類 32쪽 下右에 「四隅之隅」라 하였다. 崇德 元年(1636)에 王爵을 제정할 때, 그 순서에서 「和碩親王, 多羅君王, 多羅貝勒, 固山貝子, 鎮國公, 輔國公, 鎮國將軍, 輔國將軍, 奉國將軍」이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만분노당」의 기사에는 hošo를 「角」(모퉁이)이라는 의미로 쓴다. 『清文鑑』에 보면 hošo라는 말이 「동남·동북·서남·서북 네 모퉁이」를 의미하고 있다.

39) 中山八郎, 「明末女直と八旗の統制に關する素描」, 『歷史學研究』 第5卷 第12號, 115-146쪽.

40) 申忠一, 「建州紀程圖記」(『震檀學報』 第10卷)

41) 李鴻彬·郭成康, 「清入關前八旗主旗貝勒의 演變」(『社會科學戰線』 1981, 第1期).

42) 『大清會典事例』 卷1106

가 있었다. 數目の多寡는 같지 않다. 높은 액수는 팔기 親軍, 前鋒, 護軍인데 사람마다 月給하는 餉銀이 四兩이고 年支米가 48斛이었다. 낮은 것은 팔기 步軍이 一兩五錢, 年支米가 24斛이었다. 훈련은 북경의 禁旅八旗와 駐防八旗는 주로 步射·騎射으로 각 營마다 각 旗마다 다르다. 閱兵과 大閱 제도가 있어서 일정한 시기에 검열을 받았다. 軍紀, 軍令이 엄정했으며, 무기는 冷兵器, 火器, 말(馬) 등이다.

④청조 사회가 다소 안정되는 입관 후에 있어서도 그 실제 兵數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데, 入關前에 있어서 八旗滿洲의 兵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팔기 성립 당시에 「300人 1니루의 兵數 6萬, 입관 전후 이 병력 25萬」이라 하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또 1니루 下의 兵數, 1구사 下의 니루 數가 물론 규정은 있지만 실체는 다 다르다. 니루 總數도 기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조직상으로는 1旗는 25니루, 8旗는 200니루이지만, 『청조문헌통고』에는 甲寅年 八旗 제정 직후에 「滿洲牛衆 三百八個」라 하고, 李民憲의 『建州聞見錄』에도 兵數 多寡의 不均을 지적하고 360니루 라고 하였다<sup>43)</sup>. 또 『光海君日記』 권169 13年 辛酉 9月 戊申條의 기사에는 평안도 만포진 첨사 鄭忠信이 滿洲에 使行했을 때의 보고인데, 그는 「八部 大約九萬六千騎」라 하고 있다.

만력 11년(1583) 누르하치가 처음 거병하여 투문성을 공략했을 때의 兵數은 「兵一百 甲三十副」라 하여<sup>44)</sup> 이것은 uksin(甲冑兵)이었을 것이며, 『滿洲實錄』에 「一百의 兵」을 「쵸하(chooha)」라 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하급 무사계급으로 볼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 宣祖 31年 2月條에 宣祖와 李成梁의 子인 李如梅의 문답 중에 누르하치 兵數에 관한 언급이 보인다. 李成梁이 누르하치의 부친을 살해한 그 때(만력11년, 1583)는 30의 部衆이었다는 것이다<sup>45)</sup>. 또 왕조실록에 만력 23년(선조28, 1595)에 建州를 刺探했던 河世國의 보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르하치 屬下 1萬 5千餘名, 당시 陣을 연습하고 있는 것을 千餘名으로, 그들은 「각기 戰馬를 가지고 甲을 입었다」고 하니, 1萬5千餘名은 chooha(步兵)이고 千餘名은 uksin(甲冑兵)인 것이다. 그 때는 아직 300인 1니루제는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이니, 따라서 이 chooha(步兵)는 실록에 「舊慣」이라고 기록한 것처럼 각 uksin(族) 또는 단위로 차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병력을 바탕으로 四旗制의 原型이 이루어지고, 만력 29년(1601)에는 마침내 니루제가 성립되었다. 天命4年(1619)에는 약 200니루, 직후인 天命6年 240니루가 있었다<sup>46)</sup>. 또, 『滿文老檔』第18 天命6年 윤2월 26일조에 旗와 니루의 수가 보인다<sup>47)</sup>. 모두 합하면 231니루이다. 당시 八旗의 기준 니루 수가 25니루임을 생각할 때, 당시에 있어서 旗의 配當 니루間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231니루라는 수도 팔기의 기준 니루 수 200니루를 훨씬 초과한다. 이를 보면 당시에 기준 니루 수가 있으나 실체는 일정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sup>48)</sup>. 누르하치가 사르허戰을 중심으로 실전 병력을 조직상의 6萬의 1/3~1/4 정도로 보고 있다<sup>49)</sup>. 왜냐하면 니루 조직 등의 고찰이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天聰 4년에는 200니루에서 天聰6년에는 240니루를 넘고 있다.<sup>50)</sup>

43) 李民憲, 「建州聞見錄」, 『紫巖集』 卷之六

44) 『太祖武皇帝實錄』 卷1 癸未年條

45) 『宣祖實錄』 卷97 宣祖31年 戊戌 2월 戊午條

46) 阿南惟敬, 「滿洲八旗國初ニルの研究」, 『清初軍事史論考』(防衛大學校人文科學教養室東洋史研究室編纂), 甲陽書房(1980) 209쪽.

47) 『滿文老檔』 太祖 274~275쪽.

48) 陳佳華·傅克東, 「八旗建立前滿洲牛衆和人口初探」, 『中央民族學院學報』 1981年 第1期에 니루의 발전을 3단계로 설정하였다. ①1583~1588: 건주여진의 통일하여 니루 初編의 단계. ②1599~1601: 건주여진 통일의 완성, 四旗의 건립. 당시 40개 니루. ③ 1601~1615: 해서여진의 통일하고 八旗 創立단계, 400니루라 하였고, 李新達, 「入關前八旗兵數問題」, 『清史論叢』 第3輯 (1982)에서 팔기 건립 시에 병수 5~6萬명이고, 누르하치 晩年에는 약 9萬에 이르고, 홍타이지 시기에는 약15萬, 그리고 孔有德 등의 병력, 징발된 자제와 노부, 朝鮮兵을 합치면 入關前 청조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20萬에 달했다고 한다.

49) 石橋秀雄, 「サルフ戰前後の滿洲八旗の兵力について」, 『清初軍事史論考』, 甲陽書房, 1980

입관전에 있어서, 만주·몽고·한군 모두 611좌령, 입관 후 인구 증가와 전쟁의 수요에 따라, 강희 연간에 新增 滿洲 360좌령, 몽고 89좌령, 한군 108좌령이다. 모두 합하면, 京師에 팔기 1168좌령(반분좌령 포함), 주방팔기 800多佐領, 전국에 모두 2000좌령이었다. 좌령마다 평균 100인이 출병한다고 보면 약 20萬人으로, 팔기 兵數가 절정에 달했다. 옹정 이후 팔기 좌령 수는 증가하기도 하고 통제도 되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

## (2) 旗의 領旗관계의 변화

먼저, 팔기 중에서, 黃旗는 누르하치의 所領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天命 연간에 旗의 領有에 대한 확실한 기사가 없으나, 다만 누르하치의 아우, 수르가치(surghaci, 舒爾哈齊)의 아들, 아민(amin, 阿敏)이 鑲藍旗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太宗實錄』에 보이므로, 그의 부친 수르가치는 藍旗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旗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旗主라 하는데 이를 主旗貝勒이라 했다<sup>51)</sup>. 各旗의 管旗大臣인 구사어전도 명확한 구분이 생긴다.

天聰 시기에 가면, 『滿文老檔』이나 『太宗實錄』에 散見되고 있는데, 『太宗實錄』의 기사가 가장 명확하다. 遼西의 大凌河城을 공략할 때, 태종이 親王, 大臣들을 불러 모아, 攻城 방법에 대하여 숙을 내리고 있는 기사인데, “各旗마다 그 구사어전은 本旗의 兵을 인솔하여, 城의 어느 방향을 포위하고, 버일러는 그 후방에서 護軍을 인솔하여 策應하라<sup>52)</sup>....”

고 하여, 여기에 旗와 버일러(貝勒)의 이름 들이 구체적으로 거론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魏廷詰의 『瀋陽日記』에도 天聰 5년(1631) 경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위에 보이는 『太宗文皇帝實錄』의 기사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sup>53)</sup> 『建州聞見錄』 및 『光海君日記』 권109 光海君13년 9월 戊申條 鄭忠信의 보고, 『太

旗分	時期	天聰期(1626~1635)	
	資料	『建州聞見錄』	『太宗文皇帝實錄』
正黃旗	nurhaci(努爾哈齊)	*	『瀋陽日記』 hongtaiji(홍타이지)
鑲黃旗	nurhaci	abatai(阿巴泰, 第7子)	hooge(豪格, 太宗의 長子) abatai(阿巴泰)
正白旗	hongtaiji(皇太極, 第6子)	dodo(多鐸, 第15子)	dodo(多鐸)
鑲白旗	dudu(杜度(長子 褚英의 子))	dorgon(多爾袞, 第14子)	ajige(阿齊格, 第12子) dorgon(多爾袞)
正紅旗	daisan(代善)(次子)	daisan(代善)	sahaliyan(薩哈廉, 次子 代善의 子) daisan(代善)
鑲紅旗	daisan(代善)	yoto(岳託, 次子 代善의 子)	yoto(岳託), dudo(杜度)
正藍旗	manggultai(莽古爾泰(第5子))	manggultai(莽古爾泰) degelei(德格類, 第10子)	manggultai(莽古爾泰)
鑲藍旗	amin(阿敏(弟 수르가치의 子))	jirgalang(濟爾哈朗(弟 수르가치의 第6子))	jirgalang(濟爾哈朗)

별(\*)표는 天聰朝 正黃旗 貝勒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은 태종 자신이 本旗를 領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0) 「天聰九年專管ニル分定ニ關する新研究(下)」, 『防衛大學校紀要』 31輯(1975), 578쪽. 田中宏己, 「蒙古二旗成立考」, 『軍事史學』 第6卷 第4號.

51) 李鴻彬·郭成康, 「清入關前主旗貝勒의 演變」, 『社會科學戰線』 1982年 第1期(復印報刊資料, 「中國古代史」 1982.6)

52) 『太宗文皇帝實錄』 卷48 崇德4年 8月 辛亥條

53) 三田村泰助, 「清の太宗の即位事情と君主權確立」, 『東洋史研究』 第6輯 第2號 참조

宗文皇帝實錄』 권9 天聰5년 8월 戊申條 157쪽의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天命·天聰 시기 各旗의 領屬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天命 5~6년 경과 天聰 5년 경의 領旗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변동이 없는 것은 正紅旗인 代善과 正藍旗인 莽古爾泰 2旗 뿐이다<sup>54</sup>). 鑲藍旗는 阿敏에서 濟爾哈朗으로 바뀌었는데, 阿敏은 天聰 4년 6월에 罪로 인하여 그이 아우 濟爾哈朗이 계승하였다<sup>55</sup>). 鑲紅旗에는 代善의 子, 岳託이 있었으나 곧 鑲白旗였던 杜度가 들어 온 것은 주목해야 한다. 두 黃旗가 누르하치의 崩御 직후에 태종에 의해서 領有되고 있었다<sup>56</sup>). 즉 앞의 天聰 5년 사료에 의해, 鑲黃旗는 阿巴泰와 豪格을 들고 있다. 그러나 阿巴泰는 원래 庶出이어서 다른 貝勒들 보다 한급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鑲黃旗의 호쇼버일러(和碩貝勒)일리는 없고 豪格은 그 이전에는 호쇼버일러가 아니었다<sup>57</sup>). 따라서 鑲黃旗는 豪格이 和碩貝勒이 되기 전까지는 태종의 지배하에 있었을 것이다. 위의 阿齊格·多爾袞·多鐸에게는 완전한 旗가 주어졌다. 孟森은 이것을 누르하치의 遺命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누르하치 생전에 이미 旗의 分給이 행해진 것이 아닐까? 그러면 누르하치가 세 아들에게 준 旗는 각각 무엇인가? 먼저 두 紅旗, 두 藍旗 즉 四旗는 系統에 변화가 없으므로, 두 黃旗·두 白旗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두 黃旗는 누르하치 자신의 지배였으므로, 이것을 두 아들에게 주었을 것이다. 나머지(그 중에서 正白旗(하나는 正白·鑲白 중에서 일 것인데) 正白旗는 유력한 扈衛이지가 영유하므로, 이를 회수하기는 곤란했을 것이니, 결국 나머지 鑲白旗가 한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鑲白旗인 杜度는 代善·阿敏·莽古爾泰·皇太極 등의 貝勒에 비하면 지위가 훨씬 낮은 자이다. 『光海君日記』에는 鑲白旗가 杜度の 所領이라 하고 있으나, 과연 그가 나머지 4인과 함께 和碩貝勒이었던지는 의문이며, 杜度の 所領이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누르하치의 세력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누르하치는 자기의 세 아들에게 새로 分給할 때, 가장 약한 杜度를 褚英(cuyeng, 누르하치의 長子, 杜度の 父)의 同母弟인 代善이 所領하는 2旗 중의 하나인 鑲紅旗로 내쫓고, 鑲白旗는 阿齊格에게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阿齊格이 天聰 2년(1628)에 鑲白旗의 固山貝勒에서 물러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鑲紅旗는 代善의 독점에서 벗어나 杜度가 차지했는데, 天聰 5년(1631)의 기사에는 代善의 長子, 岳託도 들어오게 된다. 그 때문에 호쇼버일러(和碩貝勒)가 杜度인지, 岳託인지 단정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天聰 연간의 악탁의 행동으로 볼 때, 岳託이 그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代善의 지배하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두 黃旗는 도르곤(多爾袞)과 도도(多鐸)에게 주어졌다<sup>58</sup>).

그러던 것이 天聰 11년(1626) 8월 庚戌에 누르하치가 붕어하고, 태종이 즉위하자 팔기의 領旗 관계는 변동이 있게 된다<sup>59</sup>). 태종은 前代처럼 두 黃旗를 지배하려고 했으나, 당시에는 代善·阿敏·莽古爾泰가 大貝勒과 실력이 비슷하여 누르하치처럼 八旗에서 초월한 존재는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태종은 兩黃旗의 지배 대신에, 지금까지 자기 소속이던 正白旗를 제공해서 여기에서 正黃旗이던 多鐸을 들었다. 多鐸은 아직 13세의 어린 나이여서, 실질적으로는 이 旗를 太宗의 지배하에 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鑲黃旗인 도르곤은 그 지위를 잃고, 兄 阿齊格이 지배하는 鑲白旗로 옮겨졌을 것이다. 종래에 鑲白旗는 阿齊格的

54) 阿南惟敬, 「清初正藍旗改組始末考」, 『江上波夫教授古稀記念論叢, 歷史篇』, 山川出版社, 1977. 395~41쪽, 참조.

55) 『太宗文皇帝實錄』 권7 天聰 4년 6월 乙卯條 116쪽.

56) 孟森, 「八旗制度考實」,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6本 第3分(『明清史論著集刊』)

57) 『太宗文皇帝實錄』 권12. 216쪽.

58) 阿南惟敬, 「清初の八王に關する一考察」, 『 앞의 책』.

59) 白新良, 「論皇太極繼位的一次改旗」, 『南開史學』 1981年 第2期. 同, 「關於皇太極改旗問題的考察」, 『光明日報』 1982.12.22 일자. 秦國經, 「清代的八旗制度」, 『歷史教學』 1981年 第4期. 鄭天挺, 「清代八旗兵和綠營兵」, 『探微集』 171쪽, 참조.

소유였으나, 罪로 인하여, 동생 도르곤이 대신 임명되어었다<sup>60</sup>). 어쨌든 채종 즉위 후, 兩黃·兩白의 四旗가 태종의 세력 하에 두어진 것은 확실하다<sup>61</sup>). 그 후 鑲藍旗는 前述한 바와 같이 阿敏이 천聰 4년(1630) 6월에 罪로 인해, 동생 濟爾哈朗이 대신하게 된다. 正藍旗<sup>62</sup>는 莽古爾泰가 天聰6년(1632) 12월에 사망했으므로, 그 同母弟인 더거레이(degelei, 德格類)가 대신했으나, 그도 천聰 9년(1635) 10월에 급히 죽었고, 또 그 兄으로 이미 天聰 6년에 病死했던 莽古爾泰와 共謀했던 모반계획이 발각되어, 태종의 노여움을 사게 됨에, 그 일족이 서인으로 강등되고, 正藍旗가 몰수되어, 태종의 旗分인 兩黃旗에 分編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崇德 元年(1636)에 부활하여 태종의 長子 豪格에게 소속된다.

1635년 몽고인이 점차 많아지자, 몽고팔기가 성립되고, 旗色은 원래의 팔기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만주팔기 중에 있는 몽고인은 따로 선별해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주팔기 내에는 몽고인이 여전히 있었다. 1631년 各旗의 漢人을 뽑아내어 따로 一旗를 편성했다. 「팔기漢軍」이라 하였다. 흑색으로 旗幟를 삼았다. 1639년 나누어 純皂(흑), 皂鑲黃, 皂鑲白, 皂鑲紅 四旗(『清朝文獻通考』 卷179)가 되고, 1642년에 八旗로 확충했다. 旗色을 고쳐서 만주, 몽고와 동일하게 하고 흑색은 취소했다. 청 입관시에 만주·몽고·한군 각각 八旗가 있었으니, 모두 24旗였다(『청조문헌통고』 권179). 그러나 한군팔기라 하지 않고, 습관상 여전히 「八旗」라고 通稱했다. 八旗의 人戶에 편성된 자를 旗人, 旗下人 某旗에 편입되면 某旗人이라 했고 그의 자손도 某旗人으로 되었다. 팔기 호구는 3년에 한 번 조사하여, 旗外 사람이 假冒入冊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旗下人이 본인이 소속된 나무를 멀리 떠나 거주함을 허락하지 않았다(『光緒會典事例』 卷1113).

초기에 누르하치도 正黃·鑲黃旗의 領主에 불과하고, 나머지 旗는 누르하치의 아들, 손자, 조카 중에서 유력한 자가 호쇼 버일러가 되었기 때문에, 後金國을 누르하치를 지도자로 하는 8개 旗의 연방이라고 할 수 있다.

## 2. 八旗制 사회에서의 만주족의 생활

### (1) 旗地-八旗制의 土地制度

만주족과 몽고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누르하치의 用兵의 중심이 된 것이 八旗制이다. 兵士를 8개의 군단에 소속시켜서 8종의 旗色으로 구분했으나, 점차 확대하여 가면서, 쯤 부족·인민을 여기에다 分屬시켜, 일종의 국가조직으로 만들었다. 씨족·봉건적 조직을 이루게 된다. 清朝 入關前에 있어서 만주족은 씨족제도의 특징을, 그들의 생활 환경 때문에, 만주족의 軍·政 사회조직체인 八旗에는 각기 일정한 영역이 정해지고, 旗·民이 자기의 境內에서 수렵·방목·경작 등의 공동 이익을 향유하였다. 즉, 그들에게는 「씨족의 단체적 總有」라 할 수 있는 旗地가 주어지며 生計의 기초로 삼았다.

청조의 入關·北京 定都로 20만명이나 되는 팔기병 24旗가 대거 유입되었다. 그들의 귀족들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경 주변 및 京畿(直隸省)에서 3차에 걸친 대규모 토지 몰수(圈地)를 단행했다. 1644년 12월 제1차 圈地令을 시작으로 1645년 6월, 1647년 정월 3차로 행하여, 圈地에 의해 확보된 旗地는 北에는 開平(내몽골 多倫), 西에는 張家口, 東北으로는 遼陽과 海城지역, 南으로는 德州까지

60) 『太宗文皇帝實錄』 卷4 天聰2년 3월 庚寅條 53쪽, 上命罰阿齊格...以其弟貝勒多爾袞代之.

61) 『太宗文皇帝實錄』 卷3 天聰 元年 5월 丙子條 34쪽, 「上率兩黃旗 兩白旗兵 直趨大凌河」.에서도 분명해진다.

62) 彬山清彦, 「清初正藍旗考」, 『史學雜誌』 第107編 第7號(1998).

미치고 있으나 북경 주변이 제일 많았다<sup>63</sup>). 1651년까지 圈地를 당한 토지는 약 15만~22萬頃(전체 토지 290萬頃)이나 된다. 그 후 八旗의 이동에 따라 圈地의 범위는 더 확대되었고, 나중에는 주인없는 토지, 황무지 뿐만 아니라 주인이 있는 良田까지도 그 대상이 되니, 良田을 몰수 당한 농민은 그 대신 황무지를 대신 받거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 심지어 邊境에 있는 토지를 발급받게 되어 생활이 곤궁하게 되었다. 지주들은 권지를 당해 추방되기 보다 자기 소유지를 가지고 팔기인에게 투항(投充地)하기도 했다. 혹은 납세를 면하기 위해 위장하기도 했다. 토지를 잃고 유민으로, 도적이 되거나 하여,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다<sup>64</sup>).

八旗의 토지제도는 청대 특유한 토지제도이다. 旗地의 형성, 변화, 및 그 성질 문제에 대해서는 만주족 역사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旗地의 출현은 일찍이 누르하치가 만주족 各部를 통일할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다<sup>65</sup>). 1621년 7월 누르하치가 “計口授田”의 조치를 내리고 遼陽, 海州 등 30萬日(每日等于六畝)의 토지를 八旗兵丁에게 分給하여, 팔기토지제도가 정식으로 확립되었다. 거기에서는 “每男丁三人, 各耕官田一日, 又每男丁二十人, 以一人充兵, 一人應役”이라 하였다. 병농합일이 실행되고, 寓兵于農정책이 이어서, 분산된 만주족은 개체 소생산 조직에서 시작하여 兵=農으로 되었으며, 이는 원래 만주족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변화시켰다.

다음은 팔기 貴族莊園이다. 입관후에 內務部庄田(皇庄)과 宗室庄田이라 했다. 당시 귀족들은 왕왕 몇 個所 내지 몇 十個所의 莊園을 가지고 百名 노예를 거느렸다. 만주족이 요동지구에 들어 온 이후에 비교적 큰 발전을 이룩했다. 또 후금이 “降民” “來歸者”를 “民戶”에 편성하는 정책을 취해, “編民戶”정책을 시행하였다. 한족인민으로 하여금 팔기 귀족장원주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면하도록 했고, 팔기 귀족장원의 확장을 제한하여, 봉건생산관계에 신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입관 후 旗地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기지의 발전 변화와 청대의 역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1640년대~1730년대까지(순치초에서 건륭초)의 대략 1세기간 旗地는 領主경제에서 地主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의 중요한 단계이다. 번잡한 기지를 성질에 의해 3가지로 나눈다<sup>66</sup>) ① 八旗官兵을 포함해서 八旗庄田을 一般旗地라 하며, 旗紅冊地, 旗餘地와 旗升科地 등이다. ② 만주족 王公貴族에게 소속되어 신분적으로 세습적인 “王糧”의 대토지를 王庄(王公莊園)이라 하는데, 恩賜地, 帶地投充地와 私庄等 ③ 皇庄(官庄)은 淸 皇室 本身의 私有地로, 內務部庄田, 盛京의 戶部, 禮部, 工部 官庄 및 三陵 소속 官庄 등이다. ④ 기타 官地, 公旗公庄地, 園場, 馬廠 및 營盤地, 驛站地 등이 있다.

## (2) 만주족 지배하의 학교·과거제

명말에 전란으로 피폐해진 교육기관을 다시 재건하였다. 명대의 學校·科擧制를 답습하여 북경에 太學이라 부른 國子監을, 각 省에는 官學을, 그 외에 각지에 私學으로 書院을 창설하여 교육하였다. 입관 후, 유교를 국가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청조는 명대와 같은 제도를 이어받았다. 국가감 학생 수는 1,000 명이 넘었다. 특권층 귀족들은 누르하치와 그 형제들의 후손을 위해 宗學을·누르하치 叔伯의 루손들을 위하여

63) 안유정, 「淸朝 圈地政策에 관한 고찰」, 『淑大史論』 第19輯, 1997.

64) 심지어 팔기 만주인 莊頭에 의해 강제로 투충 당한 자들이 많았다. 1647년 順治帝가 圈地와 投充의 중단을 명하였으나 지켜지지 어려웠다. 강희제가 1669년 親政을 하면서, 허락없이 몰수한 토지를 되돌려주게하고 영원히 圈地 금지를 명했다. 투충인을 포함하여 노복들이 도망하는 자가 속출하여 가내노동력과 경작이 어려워지면 팔기 기인의 생활이 문제가 되므로, 청조는 逃人法으로 엄하게 다스렸다. 심지어 逃人과 관련되는 지방관리까지 처벌되었다. 그 후 圈地가 금지되고 旗地가 소작인에 의해 경작되면서 逃人 숫자도 줄어들게 되었다.

65) 金成基, 「淸入關前土地制度-兼論後金(淸)社會性質」(『淸史論叢』 1979년, 1期)

66) 王鍾翰, 「淸代旗地性質初探」(『文史』 제6집)(『王鍾翰 學術論集自選集』,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9.

覺羅學을·세습직위를 가진 만주인 蔭生을 위해 世職官學을 설치하여 교육하였다. 八旗子弟들을 위해서는 八旗官學·景山官學·咸安宮官學을 건립하였다<sup>67)</sup>. 官學에서는 주로 만주어·말타기·활쏘기의 학습·五經·漢語를 교육했다. 지방 官學으로는 府學·州學·縣學이 설립되었다. 縣學의 경우, 教諭가 教官이었고 訓導가 보좌하였다. 교관은 省的 학사감독인 學政의 감독을 받았다.

과거는 順治 시기 1645년(順治2)에 처음 실시되어 300명의 진사를 선발하였다. 1668년(康熙7)에 漢族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과거를 재개하였다. 이후 매 3년마다 실시하여, 童試·鄉試를 거쳐, 會試·殿試에 합격하면 進仕가 되었다. 1770년(건륭35)에 천민(창기·배우·포졸·아전·노예의 자손)과 부모가 喪중인 자들은 과거에서 배제하였다. 거의 명대와 유사했다. 鄉試는 순차2년에 시작하는데, 3년에 1회(子·卯·午·酉의 해 가을 8월) 실시했다. 會試는 丑·辰·未·戌 해에 禮部에서 거행하였다.

### (3) 禁旗八旗와 駐防八旗

입관 후, 팔기병의 대부분은 北京城 內外에 집중되었는데 各 숫자는 때에 따라 증감되었다. 청말에는 12만 309人(『청사고』兵志 一)이다. 북경 이외에 分駐하는 것을 “駐防”이라 한다. 북경 부근의 駐防을 「畿輔駐防」이라 하여 26處, 14,238人이었다. 東三省의 各城의 駐防에는 24處, 55,521人이다. 합계 駐防兵이 모두 105,120人이다. 청대에 있어서 팔기병은 모두 225,429人이다<sup>68)</sup>.

민족을 分編하는 것이 청대 군대 편제의 중요원칙이고 청대 군대의 특징이다. 청조의 입관 이후 정규군은 八旗와 綠營으로, 經制兵이라 했는데, 일정한 숫자를 한도로 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額設制兵이라고도 한다. 이외에 또 「土兵」, 「鄉兵」, 「團練」 등, 모두 일정한 地區에서 임시 招募하여 사용하고 수시로 해산하므로 經制兵은 아니고 全國의 군대도 아니었다. 입관 이후에 오는 사회의 변화는 팔기군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를 해왔다. 청조는 이미 全國의 정권이 되어, 지배 대상 인구 衆多한 중국을 유효하게 통치하고, 兵民合一의 팔기에 대해 개조하도록 요구하여, 하나의 전문적인 正規 군대를 창립했다. 청조 황제도 이미 전국을 주재하는 군주로, 경제상에 있어서 팔기 인원에게 “우대”를 보장하고, 그로 하여금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專門兵이 되도록 했다. 이리하여 팔기조직은 원래의 생산직능을 잃고, 八旗兵도 兵民合一에서 常備兵制로 변화되었다.

팔기 상비병제는 팔기 내에 16세 이상의 男丁은 모두 丁冊에 등기하게 했고, 연후에 兵丁의 類別에 따라, 名額을 정했으며, 각 좌령하 “挑補”에 있어서 민족 分편의 원칙을 실행하여, 만·몽·한 팔기병 상응의 단위에 편입도록 했다.

이미 순치 8년(1651)부터 鑲黃·正黃·正白旗를 上三旗로, 나머지는 下五旗로 확정하여, 서열은 上三旗, 下五旗 順이다. 황제는 上三旗의 旗主가 되어 직접 上三旗를 통할하고, 황제의 宿衛도 上三旗의 子弟 중에서 선발한 親軍이 맡도록 했다.

황제권의 강화가 팔기 왕공귀족의 권리를 축소케하여 황제의 팔기병에 대한 제어(통제)를 강화했다. 순치17년(1660) 팔기의 통솔관의 칭호를 만주어로 하던 것을 중국어로 稱謂를 고쳐, 구사어전(固山額眞)·메이러어전(梅勒額眞)·잘란어전(甲喇額眞)·니루어전(牛魯額眞)을 각각 都統·副都統·參領·佐領으로 고쳤다. 이때부터 팔기의 내부 사무는 京師八旗都統衙門에서 통일 관리하게 된다. 사실상 황제 1인의 命을 받게 되었다.

67) 張佳生主編, 『滿族文化史』, 遼寧民族出版社(1999) 185쪽.

68) 『大清會典』 卷86. 鄭天挺, 『清代八旗兵與綠營兵』, 『探微集』(中華書局, 1980) 171쪽.

옹정 8년(1730)에 옹정제가 旗主를 통하지 않고 17명의 호군을 王府守衛 임무를 맡겨, 皇宮을 守衛케 하게 되었는데, 八旗 旗主는 다만 황제의 命을 들을 따름이었다. 이는 황제의 의지가 최고로서, 팔기 귀족이 간섭할 수 없게됨을 말한다. 황제는 또 王子, 王孫을 분봉하여 下五旗에 편입하고 各旗로 하여금 다시는 단독으로 本旗 旗主 한 사람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변혁은 旗人과 本旗 王公貴族의 依附 관계를 약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旗主의 私屬에서, 황제 직접 통치의 子民으로 변하게 했다. 이처럼 그들 挑補가 八旗兵士가 된 후, 皇權의 충실한 도구가 되었다.

禁旅八旗는 수도 北京에 주둔한다. 수도의 방위, 그리고 宿衛와 扈從을 하는데, 일이 생기면 각지에 파견한다. 금려팔기 중에 직접 황제를 따르면서 숙위(扈衛)하는 책임을 하는 것을 “郎衛”라 하고, “郎衛”외에, 수도 방위의 책임을 진 것을 “兵衛”라 했다. 郎衛와 兵衛는 다른 系統에 소속된다. 郎衛의 주요한 것은 侍衛와 親軍營을 담당하는 것이고, 侍衛處에 소속되어 관리하고 侍衛內大臣이 통할했다.

兵衛중에 驍騎營은 팔기도통의 統轄에 속하고, 기타 前鋒營, 護軍營, 火器營, 健銳營, 步軍營은 統領을 설치하여 통솔하고, 팔기도통의 제약을 받지 아니했다.

입관 이후, 팔기병의 대부분은 北京城 內外에 집중되었는데 各 숫자는 때에 따라 증감되었다. 入關하여 군대 작전은 만주·몽고팔기병 위주였고 漢軍과 투항한 漢兵들은 그 다음이었다. 1646(順治3)년 이후에 漢軍팔기와 滿洲팔기는 둘 다 중시되었지만, 1650년(順治7) 이후에는 곧 新·舊漢軍 위주였고, 八旗滿洲·蒙古兵은 그 다음이었다. 이것은 만주·몽고병의 자질이 漢軍보다 떨어졌음을 말해 준다. 1675년(康熙14) 황제가 공개적으로 承認했다. “지금 팔기 인민이 武事를 게을리 하고 軍旅를 ..하여 전번에 미치지 못하였다(『清史稿』本紀5, 順治14년 正月)”. 1673년(康熙12)에 삼번의 난이 일어나자, 팔기병(漢軍 포함)은 거의 작전이 불가능하여, 할 수 없이 漢人의 綠旗兵을 이용하여, 전후 40萬을 동원했다<sup>69)</sup>. 작전 때마다 녹영·보명이 앞에 서고, 팔기병은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오래 못 가서 녹영병도 팔기병처럼 무력화되고 말았다.

駐防八旗는 전국 各地에 나누어져 주둔하는 팔기다. 入關하여 何洛會가 盛京에 駐防했고, 순치2년(1645) 팔기병을 각지에 파견하기 시작했다. 그 해 3월에 濟寧에 주방하고, 6월에 西安에 주방하고, 11월에 江寧, 杭州에 주방하는 등 점차 전국 각지에 미치게 되어 駐防八旗制度가 되었다. 처음에는 戰時의 수요에 따라 나갔고, 나중에는 지방을 鎮撫하기 위해 갔다. 주방 지역·병력 수는 처음에는 일정하지 않았다. 주방팔기의 임무는 평시에 각 전략요지를 駐防하고, 邊海防을 보위하고 綠營을 감독하고, 전시에는 整軍 참전했다. 주방팔기는 만·몽·한 팔기 관병을 합하여 營으로 했는데, 官兵의 旗籍은 수도에 있는 原佐領에 속하고, 旗務는 在京各八旗都統에 속하고, 防務는 兵部에 속하고, 일상적 管理 훈련 등은 駐防將領이 관할, 혹은 將軍, 도통, 부도통.....등직이 관리했다. 駐防兵 모두가 八旗兵인데, 그들에 의한 인민의 壓迫·危害는 일반 군대 보다 더 심하였다. 駐防 將領은 그 위세를 믿고 방자하였는데, 혹 民業을 占奪하거나 무거운 이자의 고리대를 놓거나 혹은 民婦를 強娶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다. 주방팔기는 지역으로 나누면 東北駐防, 畿輔駐防, 直省駐防으로 나눈다.

이상 팔기 駐防兵<sup>70)</sup> 모두 105곳으로 兵 약 11萬人. 주방팔기의 병종은 步, 騎를 제외하고, 제제함이,

69) 『清史稿』兵志2

70) 주방팔기 병력 部署는 駐防과 機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원칙이었다. 東北은 청조의 발상지로 당연히 주방에 중점을 두었다. 畿輔와 直省은 다음 4가지 駐防線을 형성했다. ① 북경으로부터 수원, 영하에서 랑주의 경기까지 긴 駐防線. ② 덕주에서 개봉을 거쳐 서안과 항주에 이르는 黃河, 運河駐防線이다. ③ 강녕에서 형주를 거쳐 성도까지 이르는 長江駐防線이다. ④ 항주에서 북주를 거쳐 廣州까지 이르는 東南沿海駐防線이다.

훈춘, 복이근, 호란, 길림오랍, 金州, 복주, 廣州 등지는 水師營이 없었다.

옹정·건륭 연간에 준가르部 상층귀족의 반란을 진압한 후, 귀원, 영하, 량주, 장량, 오로목제, 이리 등지에 팔기주방을 파견했고, 沿海도 천진, 절강사포 2개 駐防點이 증가하여, 전국 각지에 종횡교차하게 된다.<sup>71)</sup>

## 二. 만주족의 사회변화와 중국지배

### 1. 만주족의 사회 변화-八旗制와 入關·定都

만주족은 누르하치의 거병(1583, 만력 11년)에서 入關 시기까지 약 60년 사이의 시기 동안 광범위하고도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수렵단계의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던 만주사회가 정치적인 권력집중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지배 영역도 수렵 지역에서 遼東의 농경 지역까지 확대되어 농경민까지도 지배하게 된다. 개별·분산적인 집단에서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합되어 갔다. 앞서 언급한대로, 청조가 중국 정복을 이룩할 수 있었던 한 動因으로서 팔기제도를 상정했다. 팔기제도는 청조 군사력의 원천이며, 청조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조직이다. 八旗兵이 중심이 된 청조의 군사력은 당연히 청조 중국 정복의 일차적인 요인이 되었다. 팔기 조직이 태종 시대와 입관 후, 순치·강희·옹정 시기를 거치면서 그 내용·성격이 변화하게 되므로서 청조 사회도 변하게 되었다. 팔기제도의 이해(변화)를 통하여, 청조의 사회변화를 추적할 수 있고, 역으로 청조사의 파악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팔기제 연구는 연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록 논문의 숫자는 많지만, 실제 파악에 대한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종래 청조의 비밀주의로 인해, 사료를 제대로 남기지 않아, 관련 사료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때문이다.

1615년에 팔기제가 성립한 것을 볼 때, 그 해에 이미 「後金」이라는 정치체제의 성립(1616)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또 팔기병은 누르하치의 지배력 확립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문노당』 만력 43(1615)년의 기사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은 수렵관행에서 비롯한 씨족조직을 정치조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 매개체로 팔기제도를 창설하고 있다. 누르하치는 팔기제도를 통하여 그의 정치력을 확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후금 건국」을 통해 누르하치는 「수렵사회의 분쟁의 조정자에서 정치체의 최고 통수자로 이행」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팔기제도가 창설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버일러, 구사어전 등으로 표기되는 팔기 지배층의 정치적 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그들의 정치적인 세력은 팔기제의 구사(gdza)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sup>72)</sup>, 누르하치도 몇 개의 구사를 직접 관할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후금」이라는 국가는 各旗의 구사를 기반으로 한 세력집단의 연합체라 할 수 있다. 팔기제를 중심으로 한 지배층들의 관계·팔기제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 2. 만주족의 중국지배와 팔기제의 역할

1644년 入關·定都하여 북경에 입성한 후, 지배 세력의 중추인 팔기 만주인들은, 도르곤이 지도력을 앞

71) 邱心田, 孔德驥著(軍事科學院主編), 「中國軍事通史(제16권)(清代前期軍事史)」(軍事科學出版社, 1998). 98-134, 324-362쪽 참조

72) 鴛淵一, 「清初의 八固山 額眞に就いて」, 『山下先生還曆記念東洋史論文集』, 東京 育盟館(1938). 李鴻彬·郭成康, 「清入關前八旗主旗貝勒的演變」, 『社會科學戰線』, 1982년 1期

세워 지배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한족의 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소수의 만주인들이 중국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 무력을 앞세운 공포 정치이다. 미리부터 한족의 저항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장차 이를 위해 몽고팔기·한군팔기도 설치한 다음, 17만과 오삼계가 거느린 50만을 앞세워 入關했으므로, 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다. 李自成軍을 타도한다는 것이 북경 진출의 정당성이었지만, 입관 이후 나타나는 한족의 집단적 저항, 즉 抗淸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지만 향촌질서의 회복에는 다시 그들의 협조가 필요했다.

만주인들이 중국을 정복하고 또 지배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강경책과 회유책, 채찍과 당근을 능숙하게 구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무력을 통한 억압을 하면서, 한편으로 회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저항하는 경우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진압·탄압하면서, 청조의 정책에 협조하도록 하였다. 만주족의 풍습을 피지배층에게 강요하면서, 불응하면 청조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했다. 알고 있듯이 치발령을 내리고, 科場案, 奏銷案을 일으켜서 청조 정책에 비협조적 혹은 미온적인 경우에는 모두 단속의 대상으로 삼았다. 소위 文字獄을 유발, 대대적인 단속 효과를 본 것이다. 이것이 무력에 의한 공포정치였다. 자연히 한족의 抗淸세력은 활동이 어려우므로, 지하로 숨어들면서, 각 지역별로 조직이 이루어져, 청조 멸망시까지 지하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피지배 한족에 대한 소위 문화정책, 회유정책을 펼쳐서 청조의 협조를 구했다. 과거제의 재건이나 문화 편찬 사업 등이 그것이다. 明史의 편찬이나, 고금도서집성, 사고전서의 편찬이 중국 역대 전적을 망라 정리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실은 그러한 편찬 과정을 통해서, 청조를 비방하거나 反淸 불온 자료들을 색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으며, 以漢制漢 정책을 통하여 그들이 목표한대로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던 것이다. 발견되는 불온 서적은 禁書目錄에 편입되어, 열람 금지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처벌 대상이 되어 공포를 느끼도록 하였다. 이처럼 관대한 회유책을 구사하게 됨으로서, 형식상으로는 소위 滿漢二重체제로 통치하게 된다. 그러면 누가 탄압을 받고 누가 회유를 권유받은 것일까? 강제의 피해를 입은 것은 모두 한족들이었다. 편집사업에 동원되어 봉록을 받는 자는 독서인으로서, 舊來의 특권을 그대로 허가받은 자들이며, 관리들과 결탁한 자는 지방 향촌의 지도자들이었다. 몽골인의 경우처럼, 만주인도 그들의 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것이다. 단지 만주왕조가 몽골 왕조보다 3배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된 것이 차이점이며, 이는 만주인이 점차 사라져간 것과 표리를 이룬다고 하겠다.

그러나 방대한 중국을 그와 같은 방법만으로 통치해 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청조는 漢人の 관료제를 다시 성장시키고, 스스로 한족의 문화를 습득하여, 한족들이 말하는, 만주인들은 「夷」가 아닌, 「華」에 소속됨을 주저하지 않았으며<sup>73)</sup>, 스스로 그 가운데에 폭 빠져서 中國化해 갔다. 언어·풍속·정신적인 전통까지도 모두 버렸으며, 오직 보수적인 정권으로서 살아남는데만 신경을 썼던 것이다. 이것을 「만주인이 없어진 만주왕조」라고 표현 하고 있다.

팔기조직에 대하여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그 軍事的 職能이다. 만주족이 수십 차례 전쟁이 있을 때마다 팔기병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1644년 청이 입관하는데, 군대 작전은 팔기 만주·몽고 위주로, 한군과 투항한 漢兵은 그 다음이었다. 1646년 이후 한군과 滿洲兵이 함께 중요시 되고, 1650년 이후는 新舊漢軍 위주였다. 팔기 만주몽고병은 그 다음이었다. 1673년 삼번의 난이 일어났을 때, 팔기병(漢軍포함)은 거의 작전 불능 상태였다. 청조 통치

73) 安部健夫 「淸朝と華夷思想」, 「앞의 책」 33~57쪽

자들은 할 수없이 綠旗兵을 이용하여, 전후 40만을 동원했다. 매 작전 때 마다 녹영병을 앞세우고, 팔기병은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오래 안되어 녹영병도 팔기병과 마찬가지로 되었다. 1730년 이후 청조 통치자는 그 때마다 편의에 따라 鄉軍과 防軍을 모집하니, 綠營도 점차 虛設이 되었다. 최후로 아편전쟁 중에 녹영도 개별 부분 저항을 제외하고는 海戰에서 거의 패배하였다.

팔기제라고 하면 자칫 軍制만을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 팔기제=八旗兵制의 경우도 있지만, 구분하여 이해해야할 경우도 있다. 팔기제는 요·금·원의 頭下制를 계승하였고<sup>74)</sup>, 金의 猛安謀克制와도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팔기제가 금대의 맹안모극제를 답습했다기 보다는 金·淸의 사회구조의 同一性이 국가형태의 출현과 동시에 近似한 조직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八旗兵은 입관 후 八旗駐防으로, 다시 漢人으로 편성된 綠旗兵과 함께, 청대 軍制의 근간을 이루었다<sup>75)</sup>. 또 명대의 衛所制처럼 簽派나 招募, 補充의 번잡함이 없었으므로 그 實效를 거둘 수 있었으며<sup>76)</sup>, 이루어진 이상의 諸長들은 戰時의 장군이면서, 平常時에는 旗人의 감독·관리자였다. 초기에 있어서 이같은 특징은 八旗兵이 明軍에 비해서 보다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駐防팔기의 경우에도 만주족의 중국 지배에 있어서 지방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 三. 만주족 지배의 이완과 팔기제

#### 1. 팔기제 변화와 쇠퇴

##### (1) 홍타이지·옹정 시기의 개혁

태종 홍타이지 시기(1627~1643)는 요동지배기의 안정기에 해당한다. 심양 천도, 對漢人정책의 변화, 八王合議制를 폐지, 그리고 홍타이지 1인 지배체제를 관철시켜 나갔다. 홍타이지가 권력을 집중해 나가는 과정에서 팔기조직은 多民族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그 주요 구성원은 만주족이다. 만주족은 형식과정에서 시기의 전후에 따라 新·舊(老)滿洲로 구별하기도 한다<sup>77)</sup>. 입관전 홍타이지 시기에 팔기에 편입된 滿洲 구성원은 모두 佛滿洲(fe manju), 陳滿洲 혹은 老滿洲라 했다. 그 후에 새로 편입된 자를 伊徹滿洲(ice manju) 혹은 新滿洲라 했다. 신만주에 편입된 팔기의 문제에 관해서 보면, 청태종 시기(1627~1643)의 신만주는 청태종 때 귀순하여 戶口에 편성된 자를 가리키는데, 주로 만주팔기의 東海三部 및 흑룡강 索倫部の 族人이다<sup>78)</sup>. 天聰 元年(1627)에서 崇德 8년(1643)까지 17년간에 共携來(혹 歸附)한 新滿洲 男丁 1만 3천여명, 부인 어린이 2萬이다. 그래서 淸太宗은 그들을 男丁이 부족한 旗에 보충했다. 이것을 “整牛泉 新滿洲” “添補缺額新滿洲”라고 한다. 청태종의 新滿洲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 만주팔기의 兵源이 부단이 보충되었다.

청태종 홍타이지 시대는 만주족 사회가 만주귀족의 분권에서 中央集權化로 가는 과도기이다. 권력 투쟁

74) 張其昀, 「中國軍事史略」, 臺北 中華出版, 1956. 31~33쪽.

75) 「淸史稿」卷136 兵志 序.

76) 孫金銘, 「中國兵制史」, 臺灣 國防研究院, 1970, 195~196쪽.

77) 王鍾翰 「關於滿族形成中的幾個問題」(「王鍾翰學術論著自選集」.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9. 126~127쪽)에서, 만주는 “佛滿洲”와 “伊徹滿洲”의 구별이 있다. 佛(fe)는 만주어로 舊라는 뜻, 그래서 또 陳滿洲, 老滿洲라 한다. 伊徹(Ice)滿洲는 新이라는 뜻으로 한자음역으로 “伊濟滿洲, 衣止滿洲”라 한다.

78) 劉景憲, 「郭成康劉建新的「淸太宗時期的“新滿洲”問題」」(「歷史檔案」, 1981, 제4기)

의 과정 중에 홍타이지는 황제권을 강화하여, 후계 汗의 통치 지위를 강화하는 일련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바로 各旗 旗主의 권력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중에 改旗는 중요한 결정이었다<sup>79)</sup>. 누르하치 시기의 兩 黃旗는 홍타이지 시기에 있어서 기본상으로는 모두 두 白旗로 고치고, 누르하치 시기의 두 白旗는 홍타이지 시기에든 기본적으로 黃旗로 고쳤다. 이는 곧 설명해준다, 누르하치는 결코 자기의 두 黃旗를 홍타이지에게 交給하지 않고, 阿濟格(ajige), 多爾袞(dorgon), 多鐸(dodo)에게 交給했다. 홍타이지는 누르하치의 두 黃旗를 계승하지 않고 누르하치 시기의 두(兩) 白旗(정백·양백기)를 고쳐서 두 黃旗(정황·양황기)로 만들었다. 누르하치 시기의 兩 黃旗와 홍타이지 시기의 兩 黃旗는 旗色은 서로 같지만 기본 部衆은 크게 다르다.<sup>80)</sup> 누르하치 시기의 兩 黃旗, 兩 白旗는 서로 旗色을 바꾸었는데, 그 시점이 천명 11년 9월 丁丑이며, 홍타이지가 계위한 후 제1차 인사를 할 때, 이러한 改旗는 대체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改旗는 홍타이지 실력의 增長을 촉진했다」고 하며, 그로 인해 만주족 정권이 핵심과 중건을 형성하였으며, 穩定형세의 효과가 있었으며, 또 이러한 改旗는 누르하치 시기의 黃, 白 各旗의 후금 정권에서의 지위와 作用의 변화도 홍타이지 계승 후의 상당 장시간 존재했던 黃·白旗 모순이라는 특수한 역사의 근원이 된다. 청태종 홍타이지는 중앙집권을 강화하여, 旗制 개혁의 진행하였다.

淸의 國勢가 날로 발전하면서, 지배 영역의 확장·통치 인구의 증가에 따라, 군대가 더 필요하였으므로, 몽고인을 대량 흡수하여, 天聰9년(1635)에는 「몽고팔기」가 설치되고, 崇德 7년(1642)에는 「八旗漢軍」이 편성되었다. 이에, 원래의 팔기를 「滿洲八旗」라 하였다. 팔기 전체는 24旗로 청조 군사력의 중심이었으며, 홍타이지·옹정 시대 武功의 대부분과 入關 당시에도 대부분 팔기 24旗가 활약했던 것이다.

## (2) 입관 후의 변화-八旗常備兵制

「後金(淸)」을 만주를 중심으로 한 지방적 정권이라 한다면, 1644년 入關定都 이후에는 전국적 규모의 정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644년 北京 定都 이후, 지배할 영토와 인구의 증가로 인해 정치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족제적 성격이 강한 종래의 팔기제도의 성격을 가지고는 통치가 어려웠으니, 이점에 대해서 통치자들은 고심했을 것이다.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 인구를 넓은 토지를 지배하려고 하다보니, 필연적으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황제권의 강화를 더욱 서두르게 된다. 入關 初에 단행한 치발령 등에 대해서, 한족의 抗淸 운동이 있고, 청조는 이를 진압하지만, 동시에 더욱 더 황제의 권력 집중을 시도한다. 특히 강남 지방은 저항이 심하므로, 청군은 그들을 잔학하게 살육하였다. 만주인의 복장을 착용하도록 강요하여, 여기는 경우 그 형벌이 엄중하였다. 이러한 상황들로 미루어볼 때,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이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므로, 旗兵의 常設이 필요하게 된다. 즉, 장차 한족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진압하자면 常設兵이 필요했던 것이다. 소위 황권 강화의 목적을 겹쳐서 八旗常備兵制를 건립하게 된다. 사회제도로서의 팔기제도는 入關前에는, 兵丁이 필요하면 그 때 그 때마다 차출하여 편성하였지만, 입관 후에는 常設 병제가 된 것이다. 행정·군사의 분리현상의 초기에, 팔기제의 軍制的 성격이 더욱 강해지게 된다. 정치는 새로운 관료 기구를 창설해서 하면 되었다. 이로써 소위 軍·政기구의 분리가 이루어져 갔다. 자연히 이제 팔기는 청조 지배자의 통치권 유지를 위해, 민중 저항을 진압하는 도구로 전략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청조의 지방적

79) 李鴻彬, 郭成康, 「淸入關前八旗主旗貝勒的演變」, 『社會科學戰線』 1982年 第1期

80) 白新良, 「論皇太極繼位初的一次改旗」(『南開史學』, 1981年 第2期), 「關於皇太極改旗問題的考察」(『光明日報』 1982年12月 22日)

통제가 남아있는 과제였으나, 팔기의 성격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sup>81)</sup>).

입관 이후 청조가 차츰 중국식 제도를 채택하여, 이에 따라 八旗制度는 원래의 면목을 차츰 잃어 갔다. 順治 17년(1660)에는 官名을 중국식 명칭으로 고치면서, 구사어전, 잘란어전, 니루어전, 머이런어전을 각각 都統, 參領, 佐領, 副都統으로 바꾸었다. 팔기의 族制的·봉건적인 니루의 領有관계는 입관 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다.

옹정제 시기에 이르러 佐領制개혁 이후, 황제를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에, 구사어전(都統)·잘란어전(參領)·니루어전(佐領)·旗人에 이르는 관료적 통합조직으로서의 팔기제도로 변화한다. 旗地경제의 회복이 어렵게 되자, 옹정제는 兵丁의 정원을 늘려서, 閑散旗人을 兵丁으로 채용하고, 그들에게 兵餉을 지급하여 생활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1724년(옹정2)에 兵丁豫備軍에게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4800명의 教養兵을 신설하고, 江寧·杭州 등에 八旗水師營(해군)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이같은 旗人경제 변화를 배경으로, 옹정제는 황권 집중을 위해 종실 諸王(旗主)권력의 기반이던 팔기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기인에게 兵餉 얻는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명분으로 니루(牛彘)제의 대폭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첫째, 旗人의 호적법을 확립하였다. 旗人은 본래의 旗人(正身旗人·令戶旗人)과 令戶旗人下에 예속된 戶下旗人으로 구분되는데, 戶下旗人은 주선(珠申=奴僕)신분과 아하(노예)신분의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옹정제는 기인신분을, 令行記檔=開戶(戶下旗人이 軍功등에 의해 승격한 자, 漢인이 영호기인의 養子로 되어 旗人신분을 얻은 자)을 증설하여 3 신분으로 구분했다. 둘째는, 니루의 분류와 그 니루의 종류에 따라서 니루관리직인 좌령의 세습권을 규정하였다. 즉, 니루를 戶下旗人으로 조직된 「戶下니루」, 여러 가지 기인을 합쳐서 편성한 「公中니루」, 입관에 공이 많은 功臣·令戶旗人이 인솔하는 「勳舊니루」로 대별했다. 그래서 니루의 종류에 따라 니루를 통솔하는 좌령직의 세습권을 규정하고, 좌령 취임시에는 니루의 유래를 기록한 檔案을 보고 임명했다. 셋째, 팔기 만주·몽고·한군의 旗 혹은 잘란(甲喇, 參領)마다 틀리는 소속 니루數를 旗와 잘란으로 균등하게 하였다. 병정의 채용은 니루·잘란·구사(旗)를 단위로 병정 수 할당·선발하고 있으나, 당시까지는 니루에 평성되고 있는 旗人의 數는 니루마다 크게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 니루단위로 兵丁數를 할당하자 壯丁數가 적은 니루의 旗人은 兵丁이 되기 쉬웠고, 구사(旗)나 잘란 단위로 병정수를 할당하자, 鑲黃旗 처럼, 니루수가 많은 旗나 잘란에서는 兵丁이 될 기회가 적어, 불평등하였다. 여기서 소속 니루수가 극히 적은 鑲紅旗에는 소속니루 數가 많은 鑲黃旗로부터 니루를 이동시켜서 各旗와 잘란 소속의 니루수의 균일화를 시도했다.

옹정제의 개혁으로, 令戶旗人이 우선적으로 兵丁에 채용되었고, 旗마다 할당되는 병정채용은 어느 구사·잘란 소속이나 병정될 기회가 균일하게 되었다. 또, 옹정제는 기인생계의 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戶籍法·니루法 개혁을 하였다. 종래는 旗王下에 통솔되고 있던 下五旗人을 모두 황제권하로 통괄하여, 구사어전(旗主)권력에 의해 추대되던 汗的 권력에서 중국적·독재황제권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당시 『八旗通志初集』의 편찬도 옹정시대의 팔기제도 개혁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입관 당초에 旗人 총인구는 30만 정도였으나 圈地에 따르는 投充과 對明 전쟁에서 획득한 포로, 그리고 자연증가 등이 추가되면서, 건륭시대의 旗人인구는 100만 정도로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팽창한 기인 인구 전부를 병정으로 채용하여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양육해야할(병정으로 채용해야할) 기인과 양육하지 않을 기인을 선별할 필요가 생겼다. 호적법과 니루 분류에 의해서, 우선 令戶滿洲旗人이

81) 周遠廉, 「清代前期的八旗制度」(『社會科學輯刊』1981年 6期. 秦國經, 「清代的八旗制度」(『歷史教學』1981年 4期, 鄭天挺, 「清代八旗兵和綠營兵」(鄭天挺, 『探微集』171쪽)

양육해야 할 기인으로 인정되어 병정 채용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병정될 기회가 적었던 戶下旗人이나 令行記檔=開戶旗人, 혹은 漢軍旗人의 처우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건륭시대가 되면 出旗爲民策(병정으로 채용할 수 없는 戶下旗人이나 令行記檔旗人을 旗籍에서 民籍으로 옮김), 또, 出旗漢軍策(팔기한군기인을 민적으로 옮김)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民籍으로 옮긴 戶下·令行記檔旗人·漢軍旗人이 병정의 주변에 令戶滿洲旗人을 채용하는 令戶滿洲 중심의 구체책이었는데, 그 때문에 팔기 만주·몽고·한군의 삼자로 구성되는 팔기제도가 위기를 맞이하는 동시에 만주족의 중국 지배도 이완되는 형상을 보이게 된다.

### (3) 八旗 統屬관계의 변화

청조는 처음에 누르하치와 그의 長子 추영(cuyeng, 褚英) 및 동생 수르가치(舒爾哈齊)가 3 巨酋의 합의 공동체국가, 즉 씨족제가 남아있는 族制國家였다. 그러나 국가의 발전에 따라 공동체국가는 누르하치에게 불편했으므로, 드디어 수르가치·추영을 幽死시키고, 그 전체 部衆을 자기가 관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누르하치는 세력강화를 위해 군단 구사를 중심으로, 이것을 여러 군단으로 개편하여 八旗制를 선포하기에 이른다. 팔기제도가 성립하게 됨에 따라 族制國家(ethical state)에서 봉건국가(feudal state)로 이행되어 간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sup>82)</sup>.

여진 사회는 사회경제적 단위로 ga an 및 mukun이 있었으며, 여진사회의 상층을 형성하는 것은 領主 氏族 및 그들과 隸臣관계에 있는 諸紳(ju en,)이며, 그 아래에 irgen(民, 百姓), 그 아래에 aha (奴隸)가 있는데, 이들이 바로 생산의 직접담당자 계층이라고 보는 것이다. 씨족사회의 해체와 더불어 강력한 전제적 지도자가 나타나 ga an·mukun을 결합해서 aiman(部族)을 형성하고, 다시 몇 개의 aiman이 결합해서 gurun(國)이 성립한다. 이 gurun을 專制 家長이 지배하는 族制國家라고 보고 있다. 즉 ga an·aiman은 본래 각기 독립적인 존재였으나 「gurun」이라는 통일국가로서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팔기제인 것이다. 누르하치는 八旗와는 별도로 강력한 親兵인 「바이라(bayara, 擺牙喇)」를 양성하였는데, 이 bayara의 성립은 바로 軍·民의 분리를 보여주며, 따라서 이제부터는 단순한 族制國家가 아니고, 封建國家로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팔기제는 兵農一致制라고는 하지만 旗下의 壯丁 전부가 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징집되고 나머지는 餘丁으로 남아, 농경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여정의 數는 장정 전체의 半數 以下여서, 餘丁만으로 兵을 부양할 수 없으며, 또 그들이 고도의 경작 능력도 없으므로 인해서, 농업생산의 중핵을 담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 漢人·朝鮮人의 포로 및 奴隸에 의한 농경이었다. 그들은 본래 상당히 발전된 농업 사회의 사람들이어서, 餘丁을 대신해서 여진사회에서 農業생산의 중심세력이 되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등장하는 노예의 존재는 淸初의 여진 사회가 八旗制의 성립과 발전에 따라 봉건적 사회로 이행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八旗制度는 兵制上的 機關조직인 동시에, 民을 統御하는 機關이며, 또 일반 國政을 집행하는 기관이다<sup>83)</sup>. 그러므로 모든 國事가 旗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청조 초기 당시로서는 우선 軍事가 가장 중요하였으며, 일반 정치라 해도 대부분은 軍事였기 때문에, 자연히 軍政이 중심이었으니 「民」이 곧 「政」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팔기제도도 軍制인 동시에 徭役制였으며, 그것은 당시의 사회형태로서 볼 때, 軍制와 徭役制를 겸비한 조직·기구로서만이 비로소 국가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82) 三田村泰助, 앞의 책, 467~491쪽.

83) 『淸朝文獻通考』 卷179 兵考1 兵制 참조.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팔기제도도 그 자체가 국가의 지배기구였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황제·국가권력과 팔기제도와와의 관계를 상징할 때, 「니루의 구성원에게 까지 연결되는, 무수히 많은 線이 결국 한 사람 汗의 손에 매여 있는 것」이며<sup>84)</sup>, 그 統屬관계는 관료적 統屬관계의 重積이고 봉건적 領有관계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統屬」이란 일정한 통제 아래에 속하는 것, 혹은 소속의 관사(官司)를 통할하여 다스림을 말한다. 청태조 누르하치는 「독재적 군주」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팔기제도도 청태조 누르하치의 統屬下에 있는 관료적 지배 기구이다. 그러나 팔기제 성립으로 인하여 종래의 「합의제」에서 차츰 「分權」이 이루어졌으며, 各旗는 독립권 및 汗의 선거와 파면권을 갖게 되어, 汗의 독단적인 집행을 막았다. 旗主 및 議政大臣들이 공동으로 토론하여 그 중에서 多數의 의견을 채용하였다. 이렇게 보면, 팔기의 통속관계는 일종의 「봉건적 관계」라고 본다<sup>85)</sup>. 『滿文老檔』太祖38 天命7년 3월 3일 기사에서, 청태조 누르하치의 八子가 八王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태조를 계승하여 汗의 지위는 그들 八王의 손으로 추대하였다. 더욱이 滿·蒙·漢 大臣, 審査官이라는 여러 관료는 汗 아래에 직접적으로 統屬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王 아래에 통속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王權은 독재군주권이 아니고 추대왕권이며, 관료 기구는 군주독재권 아래에 매여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八旗制下에서의 統屬관계는 관료적 重積이 아닌 봉건적 統轄인 것이다<sup>86)</sup>.

入關前에는 8王을 중심으로 하여, 宗室諸王은 각각 旗 혹은 니루를 領有함으로서, 각자의 권력 기반 및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入關前의 팔기제도도 국가의 지배 기구로서 汗 아래에 統屬하는 관료적 지배 기구라고 하기보다는 각자가 宗室諸王 아래에 통속되어 있는 봉건적 지배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入關 후, 세종 옹정제의 개혁을 거친 후에라야, 비로소 관료적 지배 기구로서 황제권에 直轄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팔기의 각 旗主(구사어전)는 군주의 명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旗人은 도 각각 旗主에게 복종하면서 조직을 유기화하였던 것이다.

#### (4) 八旗駐防의 변화

팔기제에서 八旗팔기군은 청조의 보위와 내란·외침을 막아내는 임무와 중앙·지방의 漢人을 감시하며, 순적으로 우세한 綠營軍<sup>87)</sup>을 견제하게 하였다. 이렇게 보면 八旗軍은 국방을 위한 常備軍이며, 또 청조의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였다. 임시적인 군사기지에서 시작한 八旗駐防이 18세기 중엽에는 상설화 되어, 八旗의 人數가 점차 증가되면서 그 본래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八旗의 조직, 행정·재정상의 제 문제와 國內外의 정치상황들이 八旗駐防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 청말에 가면 팔기의 숫자는 두 배로 증가한다. 현역병인 馬甲의 정원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복무하지 않는 閑散旗人의 수도 급증한다. 여기에다가 18세기말, 물가 앙등으로 인해 원래 旗兵 자신이 부담했던 무기비·장례비·혼례비·여행비와 閑散旗人에게 지급되는 진흙미를 八旗駐防 자체에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八旗駐防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이 매우 적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駐防將軍들은 營馬의 수를 줄이고, 駐防 內의 가옥과 토지를 漢人들에게 임대하거나 심지어 고리채를 내기도 했다. 군사훈령의 횡수나 군사장비

84) 『滿文老檔』太祖 404쪽, 安部健夫 「앞의 책」 282~283쪽.

85) 李宗侗, 「清代中央政權形態的演變」, 『史語所集刊』 第37本 上冊 180쪽.

86) 細谷良夫, 「清朝に於ける八旗制度の推移」, 『東洋學報』 第51卷 1號 3쪽.

87) 任桂淳著, 「清朝八旗駐防興衰史」, 北京 二聯書店, 1993. 127쪽 참조. 綠營兵에 대해서는 宋正洙, 「清初期 綠營制의 理念과 그 機能」, 『全北史學』 第7輯, 1883, 171~193쪽. 金在文 「清代 常備官兵의 實態」, 『史叢』 第23輯, 1979. 太田出, 「清代綠營의 管轄區域とその機能」, 『史學雜誌』 第107編 第10號 참조.

를 감축하기도 했다. 그리고 가난한 旗人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명목뿐인 養育兵·예비병·餘兵 같은 불필요 병사들을 선발했다. 그러나 旗人구제를 위해 취한 조처들은 별 효과가 없었으며, 駐防은 도리어 부채만 지게 되고, 駐防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旗人 개인의 궁핍·부정부패 문제·팔기주방의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八旗駐防兵은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되었다.

民國 연간에 오면 八旗官兵은 자유로이 籍을 가질 수 있었는데, 注籍하는 자는 漢人과 마찬가지로 지방 관청의 관할을 받았다. 자유로이 각종 직업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만주 성씨를 버리고 한족 성씨와 이름을 사용했으며, 『政府公報』에 旗務가 실려있는 것이 民國17년 3월24일자에 보이는데, 1932년 滿洲國 성립후에 폐지되었다. 1938년 新疆錫伯營을 縣治 改設할 때 하였는데 최후의 八旗 소멸 시점으로 본다<sup>88)</sup>.

## 2. 만주족 지배의 이완·한계

### (1) 旗人의 궁핍과 生計問題

입관 前後의 旗人은 지급된 旗地로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기인에게는 구사어전(旗主)이 인솔하는 전쟁시에는 口糧(出征중의 식량)·行糧(出征手當)이 지급되고, 그 대신 전쟁에서 사용하는 말의 사육이나 軍器의 정비 등 비용 일체를 自備해야 하며, 旗地를 기초로 각각 자립적 경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삼번의 난 이후, 그들의 사치화·호구 증가 문제와 함께, 물가의 상승에 대한 압박, 八旗兵의 가족규모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기인에게 지급되는 공급품과 신항(薪餉)은 인상되지 않아서 생활이 곤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旗人들은 원래 賣買가 금지되어 있는 旗地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빚을 갚지 못하자, 결국 旗地경제는 파탄을 가져왔다. 즉, 기인 생계문제가 대두되었다<sup>89)</sup>. 漢人 소유로 넘어간 旗地를 다시 매입하여 井田法에 의해, 일부 旗人들에게 제공하여 직접 경작토록 하였다. 이러한 旗地에는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된 세금으로 빈곤 旗人을 구제하였다. 점차 旗人은 兵丁에게 지급되는 兵餉(銀·米)나 관료에게 지급되는 俸餉(銀·米)에만 의존하게 된다. 옹정시대가 되면 旗人은 거의 국가에서 지급하는 兵餉과 俸餉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된다. 기인이 봉급을 받기 위해서는 병정·관료가 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兵丁·관료는 정원이 있어서 기인 모두가 관료가 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조정에서 兵丁으로 선발되지 못하는 閑散 旗人(無職)을 변경에 보내 개간하게 하거나, 북경 주변에 「八旗井田」을 설치하여 다시 旗地경제를 영위하게 하는 대책을 취하지만, 기지경제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팔기제의 팔기병도 점차로 그 존재 의의를 잃게 되고, 실제로 기능·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변하게 되었다. 건륭 말년<sup>90)</sup>에 팔기의 生活苦를 구제하기 위하여 팔기 3千餘丁을 吉林省에 보내었고, 仁宗 嘉慶帝도 盛京(奉天=瀋陽)에 在留하는 宗室에게 토지를 分給하였고, 拉林·双城子の 개간을 命하여 八旗兵丁을 구제하려고 했으나 별다른 효과는 없었으며, 원래부터 경작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던 旗人들이 경작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여서, 그것이 그들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다. 「旗人의 生計問題」는 淸初부터 등장하는 쥬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淸朝 정부로서도 속수 무책이었다.

88) 佟佳江, 「清代八旗制度消亡時間新議」, 『民族研究』, 1994年 第5期(復印報刊資料, 『中國古代史』, 1996年 第1期)

89) 韋慶遠, 「論"八旗生計"」, 『社會科學輯刊』, 1990年 第5-6期(『明清史新析』(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1995) 412~431쪽에 수록). 嚴愛景, 「有關八旗生計措施」, 『中央民族大學學報』1996年 第6期. 周遠廉, 「八旗制度和"八旗生計"」, 『滿學研究』第7輯, 2002

90) 劉德鴻, 「乾隆時滿族統治階級的腐朽與"八旗生計"」, 『滿學研究』3輯(1996)

청대 八旗子弟의 성·쇠는 청조의 興亡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옹정제도 인정하고 있듯이<sup>91)</sup>, 쇠퇴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入關後에 팔기병들이 일종의 職業兵丁으로 된데 있다. 만약 청조가 道光연간에 낙후된 팔기제도를 개혁할 결심을 했더라면, 旗人이 자기 생계를 도모하게 하고 官養 旗人을 自養 旗人으로 개혁하여, 뒷날 旗人의 窮迫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sup>92)</sup>.

## (2) 만주족 지배의 한계

청조의 국가권력이 황제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각·군기처같은 국가의 樞要기관도 단지 황제의 보좌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 강희·옹정·건륭제처럼, 아무리 유능한 황제라도 통제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황제의 一人獨裁는 곧 부정부패의 위험이 매우 높다. 뿐만아니라 행정상의 많은 문제점의 노출, 즉 滿漢並用制나 검임제는 책임의 소재가 분명치 않은 단점으로 인해, 행정업무가 지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 관리의 경우, 회피제·3년 임기제 등을 시행한 결과 지방관의 반란은 막을 수 있었지만, 관리들이 전혀 생소한 지역에 부임하므로, 업무를 익힐 시간적 여유가 적어, 지방행정에 지장을 초래했다. 또 涓納制로 관리가 된 사람은 다시 부정을 자행하고, 관리들의 사치와 부패가 국가 재정을 고갈시켰다. 또, 건국 초기의 만주족 정신들이 사라진 것이다. 그것은 만주족의 漢化<sup>93)</sup>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면 漢化의 배경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만주족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열등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자신감을 잃게 되는 과정이 漢化의 과정이다. 어떻게 하든지, 중국인들로부터 동북 지방의 만주족들이 야만인이라고 멸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만주족 자신이 문화적으로 중국 한족에 비해 열등하고, 그런 능력이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역대 황제들은 중국문화에 심취하게 되는데, 이는 청조 지배층들이 과거 중국인들의 「화이사상」에 대해서, 그 번용에 힘쓴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주족 지배층들의 생각에는, 중국문화에 동화되어, 중국화한다면 그들도 야만인이 아닌, 중국인 내지 中華의 범주에 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 만주족 지배층들도 「중화」의 범주 속에 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결과로, 강희·옹정·건륭 황제들은 스스로가 노력하여 모범적으로 중국 문화에 심취·빠져들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였으나, 결국 중국문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만주인들이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배워 사용하고 만주족문화 보다는 중국문화를 접촉하다가, 성년이 되어 통치자로 군림하게 되면, 만주족 고유의 국수(國粹) 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누르하치는 민족의식의 자각에서, 1599년(萬曆27) 경부터 몽고문자를 차용하여 만주어(無圈點滿文, 舊滿文)를 적었는데, 다시 홍타이지의 명으로 1632년(天聰6)에 개량(有圈點滿文, 新滿文)되다가, 입관 후에도 한문과 함께 공식 문자로 公文에 사용하였다. 入關 후, 그들은 중국 古典을 滿文으로 번역·보급하여 만주어를 한어(漢語)와 상등한 문화어로 격상시키려는 언어정책을 폈다. 1650년대에는 이미 방대한 양의 고전 번역이 이루어졌다. 강희(康熙) 시대의 가장 절박하고 힘든 문화정책상의 과제, 즉 만주족이 거대한 한족(漢族)과 몽고족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만난 가장 큰 문제가 청조의 국어 문제였다. 지배 민족의 국어인 만주어와 피지배 민족의 언어인 한어 및 몽고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하는 문제, 滿洲語 속의

91) 傅樂煥, 「關於清代滿族的幾個問題」(「中國民族問題研究集刊」, 第6輯, 1957), 王春瑜 「八旗子弟的興衰」(「百科知識」, 1980年 1期)

92) 柳涵 「清代八旗子弟的腐化和沒落」(「書林」, 1979年 2期)

93) 管東貴, 「關於滿族漢化問題的意見的討論」, 「大陸雜誌史學叢書」, 第4輯 第5冊

漢語 차용어의 문제, 그리고 만주족이 만주어를 잊어버리고 한어를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그 대처 방안의 하나가 어제(御製) 만주어 사전의 편찬이었다. 청조는 1700년대에 일곱 종류나 되는 방대한 규모의 만주어 사전인 『청문감(淸文鑑)』을 편찬하지만,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수인 만주족들이 한족에게 동화되어 가는 현상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인해 결국, 滿洲文字는 西太后에 의해 滿文폐지령(1902년, 光緒28)이 선언되면서 그 전부터 공문서에 사용하는 만주어를, 황제가 중국어를 잘 알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체면상 유지해오다가, 공식적으로 사용폐지를 선언한 것은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만주족 지배자들의 고뇌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결국 소수민족인 만주족의 언어와 문자로서 중국을 통일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은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포기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만주족 본래의 국수(國粹)(한 나라나 민족이 지닌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인 장점)를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서 일까? 아니면 중국에 대한 문화적인 흥미가 그것보다 더 앞섰기 때문일까? 혹은 만주인들도 중국인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오는 것일까? 소수민족이라 역부족이므로, 그들 스스로가 포기한 때문일까? 현재 滿洲人들은 一千萬을 헤아리지만, 젊은층들에 의해 그들 民族語인 滿洲語를 다시 배우고 사용하자는 운동도 있고, 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젊은 만주인도 많이 있다. 현재 만주족 인구 약 一千萬 중에 만주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흑룡강성 치치하얼(齊齊哈爾) 三家子村 일부 100명이 못되는 7,80세의 노인들 뿐이다. 그들이 사라지면 만주어 口語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민족의 언어·문화·종교·습속·역사를 유지·존속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또, 만주족의 중국 지배 과정에서 나타나는 팔기의 궁핍화, 그리고 旗人·정부의 대책들이 전개 과정을 보면서, 필자는 필자는, 이것이 역사적인 환경이 같지는 않아도, 에도 시대 일본의 무사계급이 곤궁해지는 현상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서, 흥미롭다. 지도층을 중심으로 기강 쇠신과 재정개혁을 추구하지만 결국, 무사들의 궁핍을 국가가 구제할 수 없었던 일본처럼, 청조의 경우도 궁핍 旗人들의 生計문제를 청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 맺 음 말

이상에서 팔기제, 그리고 팔기제와 만주족의 중국지배의 관련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팔기제의 실체를 규명하는 문제부터 해결 한 다음에, 만주족의 중국지배 문제를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왜냐하면 팔기제도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한 문제여서 한 마디로 요약·검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팔기제는 만주에서, 「後金」에서 「大清」으로 성장한 만주 국가가, 入關·定都하여 중국 지배를 가능하게 한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은 청조 연구자라면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못한 점이 많다. 당시의 자료가 부족한데서 오는 문제이다. 이점에 대해서 조선측의 사료나 몽고측의 사료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滿文으로된 檔案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만주족의 중국지배에 대해서는, 청조가 성공을 거둔 정책·제도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것들의 변화, 즉 팔기제도의 변화에 다른 청조의 변화, 청조사회의 변화에 따른 팔기제도의 변화의 상관 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팔기제도 쇠퇴의 원인이 무엇이며, 만주족 지배의 이완·쇠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대상이다. 물론, 한 가지가 아닌 복합적인 원인들이겠으나, 확실한 자료에 근거

하여, 만주족 지배의 성격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시 만주족 지배층들은 다수의 한족을 안정적 효과적으로 통치·유지하는데 일이, 우리가 청조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할 때,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만주인 지배층들은 현실적인 문제였으니까, 항상 불안하였을 것이다. 비록 입관후의 시대는 평화시대라고는 하지만, 항청운동 지방 농민 반란·소수민족의 반란 등등은 끊이지 않았다. 만주인들이 선택한 통치방법 중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것이 무력 통치, 즉 감시와 사상탄압 등을 통한 정보정치·공포정치였을 것이다. 이미 강희·옹정 년간에 旗人의 궁핍·생계문제가 쏠구각적인 문제로 부각되었으니, 그렇게 본다면, 안정적인 만주족의 중국지배도 짧은 기간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리고 황제권이 황제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안정적 盛世라고 불리는 옹정·건륭 연간에는 사회 모순이 있긴 했어도, 표면적으로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경·도광 연간에 이르러면 청조 지배의 이완·외세의 충격 등으로 인해, 그 동안 청조 사회 내부에 있던 모순이 드러나게 된다. 시기 적절하게 팔기제도의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했다라면,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 후에도 清末에 가서도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역사적인 여건이 성숙을 성숙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만주족은 그들이 소수민족이어서,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때문에 무력적 억압정책을 택하고, 다시 항청운동으로 나타나고,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신해혁명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만주족은 비록 수렵민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총명한 민족으로 불린다. 처음에 滿洲文字의 창제나 그들이 「여진의식·습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중국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통치한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만주족의 통치가 한족들에게 부정적으로 투영되었겠지만, 이전에 등장했던 다른 정복왕조에 비교하면 주도면밀한 통치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만주인들은 입관 이후, 청조의 旗人에 대한 배려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생활이 오래 계속되어 만주족 본래의 근검·절박한 생활을 잃고, 소비생활에서 사치·나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旗人의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인들이 빌려쓰던지, 아니면 권력을 이용한 뇌물 거래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청말에 청조의 지방·중앙관리 할 것 없이 부패의 극치를 이룬 것을 볼 때, 그 이유가 이같은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주제어: 만주팔기, 팔기제도, 팔기제, 팔기, 만주족, 청조

## 提 要

### 八旗制與滿洲族的中國支配

徐正欽 (安東大學校 歷史系 教授)

在這里寫的文章, 我要論述對於八旗制和滿洲族(滿族)的消長。追究八旗制的本質, 聯系中國支配政策或支配方法與八旗制的問題真不簡單。首先解決究明八旗制本質的問題后, 追究滿族的中國支配問題。

滿洲八旗制是在滿洲(東北)地區, 從後金國成長到大清王朝的清朝國家能成功入關·定都和中國支配的原因

之一。但是，對於那個制度具體的本質有很多不清楚的地方。是因為當的資料不足所以發生的問題。對於這一點，我同感發掘朝鮮或蒙古側的史料，檔案，滿文資料后，活用于研究。

對於滿族的中國支配問題，我們要研究檢討對於清朝之成功原因的政策·制度，還有那個的變化，就是因八旗制度的變化而發生的清朝變化，因清朝社會的變化而發生的八旗制度的變化，這些相關問題。我們還要研究檢討八旗制度衰退的原因，滿洲族支配的松懈·衰退的原因。當然，不是一個原因，而是複合多種原因。但是我應該根據確實的資料，把滿洲族支配的性格，追究下去。

比當時滿洲族支配層對於安定地有成效地中國統治·維持，我們要追究清朝社會性格時苦悶，因為滿洲支配層是現實問題所以可能更不安。雖然入關后時期是和平時代，但是不斷地發生抗清運動·地方農民叛亂·小數民族的反亂等。滿族人選擇的統治方法中最確實地有成效的，可能是通過武力統治，就是監視和思想彈壓等的信息政治·恐怖政治。皇帝權力集中的有成效的統治已經在康熙·雍正年間發生了旗人的貧窮·生計問題。這樣看的話，安定地滿洲族的中國支配只不過是短期間。還有皇帝權過度地集中在皇帝私人所以比較屬於安定盛世的雍正·乾隆年間雖然有社會矛盾，但是表面上沒有嚴重地顯露。但是到嘉慶·道光年間因為清朝支配的松弛·外勢的沖擊，所以顯露清朝社會內部的矛盾。如果時期的當地勵行了八旗制度的改革的話，可能更有成效的統治。以后，到清末改革會成功的歷史性的條件不合，所以讓他們不能成熟。

入關以后，滿洲族因為對於旗人們清朝政府的配慮，所以可能營為比較安定地生活。但是，因為長期間的城市生活，消失了他們原來之勤儉質朴之精神風潮，逐漸變成了奢侈和懈怠生活。對於旗人自身所用的生活費用的增加分，應該充當用借錢，或者參加賄賂等。清末地方官吏腐敗的極致現狀，就是從這樣的旗人情況招來的。我想清朝時期的旗人生計窮乏現狀與日本江戶幕府時期武士的窮乏現狀有類似之一點。與日本江戶社會一樣，清朝的救濟旗人生計窮乏政策也沒有成功的。

總之，八旗制是可能滿洲族之入關定都的政治軍事制度，又清朝武力的根幹。八旗制有軍事的機能和政治社會制度的機能。